



2025년 남양주시체육회 정기이사회

남양주시체육회 창립 30주년
시민과 함께한 30년

목 차

<input type="checkbox"/>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3p
<input type="checkbox"/>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개정(안)	75p
<input type="checkbox"/> 남양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 개정(안)	109p
<input type="checkbox"/> 남양주시체육회 인정단체 가입 승인(안)	133p
<input type="checkbox"/> 남양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임명 계획(안)	139p
<input type="checkbox"/> 남양주시체육회 정기총회 안건 상정(안)	145p
<input type="checkbox"/>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보고	149p

2025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부의안

의안번호	제1호	안건 종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결사항 <input type="checkbox"/> 보고사항	
건 명	2025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제 안 자	사무국장	

1. 의결주문 :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 부의근거 :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18조 제2항 제1호

3. 제안사유 :

2025년 체육회 각종 사업 업무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의 적정여부 심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운영과 회계처리를 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2025년 사업계획 : “남양주시체육회 창립 30주년을 기념” 하며, 스포츠 저변 확대 및 화합을 통한 조직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 2025년 수입·지출 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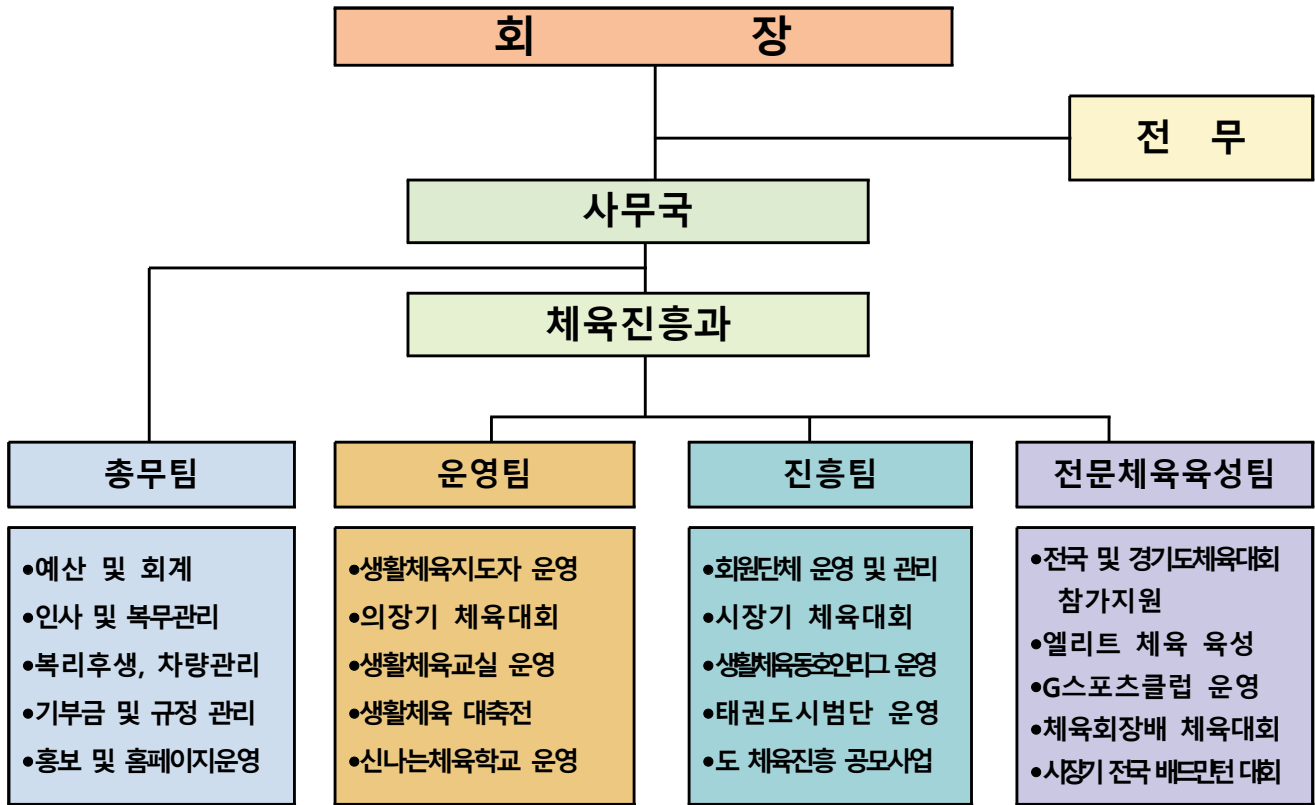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4년		증(△)감 (A-B)
	예산(안) (A)	구성비	예산 (B)	구성비	
합 계	5,254,649	100%	4,833,334	100%	421,315
1. 시 비 보 조 금	3,595,343	68%	3,104,533	64%	490,810
2. 체 육 진 흥 기 금	90,000	2%	80,000	2%	10,000
3. 국 비 보 조 금	12,000	0%	86,468	2%	△ -74,468
4. 국 시 비 보 조 금	56,000	1%	0	0%	56,000
5. 도 비 보 조 금	150,500	3%	150,900	3%	△ -400
6. 시 교육청비보조금	280,000	5%	280,000	6%	0
7. 도시교육청비보조금	122,540	2%	122,540	3%	0
8. 국 도시비보조금	388,752	7%	377,486	8%	11,266
9. 도 시 비 보 조 금	14,256	0%	14,256	0%	0
10. 자 체 수 입	452,302	9%	507,682	11%	△ -55,380
11. 기 부 금 수 입	39,815	1%	59,336	1%	△ -19,521
12. 출 연 금	50,138	1%	50,133	1%	5
13. 후 원 금	3,003	0%	0	0%	3,003

5. 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 참조

일반현황

1 조직 및 업무현황



2 직원현황

○ 정 원 : 29명 / 현원 28명

구 분	계	전 무	국 장	과 장	팀 장	사무직	지도자	기능직
정 원	29명	1명	1명	1명	4명	9명	12명	1명
현 원	28명	1명	1명	1명	4명	9명	11명	1명

3 임원현황

○ 정 원 : 현원 79명

구 분	계	회 장	부회장	이 사	감 사
정 원	79명	1명	14명	61명	3명
현 원	79명	1명	14명	61명	3명

(이사회 기능) 사업계획 및 예산, 규정 제·개정 등 심의

4 회원단체 현황

○ 총괄표

구 분	계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	비 고
합 계	66개	60개	-	4개	
종목단체	50개	45개	-	4개	관리단체 1개
읍·면·동체육회	16개	16개	-	-	

○ 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

검도회	게이트볼협회	걷기연맹	골프협회	국학기공협회
궁도협회	그라운드골프협회	농구협회	당구연맹	댄스스포츠연맹
드론항공협회	배구협회	배드민턴협회	보디빌딩협회	빙상연맹
복싱협회	볼링협회	바둑협회	사격연맹	산악연맹
승마협회	수상스키웨이크 보드협회	스키협회	씨름협회	소프트테니스협회
수영연맹	야구소프트볼협회	우슈협회	육상연맹	유도회
족구협회	체조협회	축구협회	킥복싱협회	탁구협회
테니스협회	태권도협회	파크골프협회	패러글라이딩 협회	피구연맹
합기도협회	해동검도협회	주짓수회	수중핀수영협회	자전거연맹
트리클라이밍협회 (인정단체)	줄넘기협회 (인정단체)	에어로빅합합협회 (인정단체)	브리지협회 (인정단체)	밸리댄스협회 (관리단체)
와부읍체육회	진접읍체육회	화도읍체육회	진건읍체육회	오남읍체육회
퇴계원읍체육회	별내면체육회	수동면체육회	조안면체육회	호평동체육회
평내동체육회	금곡동체육회	양정동체육회	다산1동체육회	다산2동체육회
별내동체육회	-			

(총회기능) 본회의 해산 및 정관, 정회원단체의 가입, 사업결과 및 결산 등 심의

2025년 사업계획

사업추진 방향

남양주시체육회 “창립 30주년” - 시민과 함께한 “30년”

(창립 30주년 기념 체육대회) 임원, 회원단체, 생활체육동호인이 함께하는 체육활동(명랑운동회)을 통한 “축제의 장” 마련

(화합·통합 임원·회원단체 워크숍) 화합과 소통, 조직 활성화를 통한 단체역량 강화

[진 흥 팀]

(규정 정비) 종목단체·읍면동체육회 규정 개정을 통한 단체 조직 정비

(단체 활성화) 단체 등급 심의 및 활동 평가 정례화

(행정 일원화) 단체 활동 보고·징계 범위 및 절차·표창 절차 등 행정 절차 일원화

[운 영 팀]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수혜자 증대

(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 생활체육지도자 자체 멘토링(수업) 실시 및 추가 자격증 취득을 통한 수혜자 생활체육서비스 질 향상

[전문체육육성팀]

(경기도체육대회 종합 8위 목표) 전 체급, 전 종목, 전략종목 출전 및 우수선수 지원으로 “종합순위 2단계 상승”

(전문체육 선수 지역 연계 기반 고도화) 선발전을 통한 관내 우수선수 자원 확보 및 전문체육 활성화 기여

진 흥 팀
[회원단체 사업]

제19회 남양주시장기체육대회 개최지원

- ◇ 우리시 대표 체육대회인 시장기 대회 개최를 통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동호인 간 화합하며 생활체육 활성화 증진에 기여

1 개요

- 기 간 : 4월 ~ 11월 / 8개월간
- 개최규모 : 46개 종목단체 15,000여명
- 장 소 : 관내 체육시설
- 예 산 액 : 240,000천원
- 주최/주관 : 남양주시체육회 / 해당 종목별 협회

2 추진계획

【종목별 개별 개막식 개최 - 단체보조금 지원 확대】

- 46개 전 종목단체 대회 개최
- 종목별 개별 개막식 지원
- 체육회 홈페이지 및 시 홈페이지 홍보를 통한, 참여 동호인 증가

3 예산계획

- (사무관리비) 17,500천원(상장 및 케이스 제작)
- (공공운영비) 16,100천원(보험료)
- (행사운영비) 16,800천원(트로피 및 메달 제작)
- (업무추진비) 600천원(종목단체 정담회 및 격려)
- (단체보조금) 189,000천원(46개 종목단체)

제15회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육성지원

- ◇ 연중 정기적인 종목별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스포츠 가치 확산을 통한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모두를 위한 스포츠 생태계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1 개요

- 기 간 : 3월 ~ 11월 / 9개월간
- 개최규모 : 8개 종목단체 6,000여명
- 장 소 : 관내 체육시설
- 예 산 액 : 70,000천원
- 주최/주관 : 남양주시체육회 / 해당 종목별 협회

2 추진계획

【종목별 4회 이상 리그전 운영】

- 종목별 평가항목 수립을 통한 보조금 차등 지급
- 안전사고 고 위험 종목 보험비(치료비) 상향

3 예산계획

- (공공운영비) 8,000천원(보험료)
- (행사운영비) 11,000천원(대관료, 현수막 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천원(종목단체 정담회)
- (단체보조금) 50,800천원(8개 종목단체)

남양주시태권도협회 태권도시범단 운영지원

- ◇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통하여 우리시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고, 선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태권도 활성화 도모

1 개요

- 기간 : 2월 ~ 12월 / 11개월간
- 장소 : 남양주청소년수련관 등
- 인원 : 120여명
- 예산액 : 130,000천원

2 추진계획

【체계적인 수업 및 다양한 시범공연을 통한 실력 향상】

- 관내 행사(체육·문화 등) 선제적 시범 공연 추진
- 전문적, 체계적 수업을 위한 엘리트 코치 배치
- 하계 전지훈련(해외)을 통한 선진지 견학 및 시범단 성장도모

3 예산계획

(보 수) 25,000천원(코치수당)

(단체보조금) 105,000천원(피복비, 대관료, 하계훈련 등)

종목별 단체육성 지원

◇ 종목활성화 및 동호인 저변확대, 각종대회 참가 등 종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류비를 지원 하고자 함

1 개 요

- 기 간 : 1월 ~ 12월 / 연간
- 대 상 : 47개 종목단체(가입 46개 종목, 미 가입 1개 종목)
- 예 산 액 : 82,800천원

2 추진계획

【유류비 지원을 통한 원활한 업무진행 추진】

- 종목별 지원 기준

구 분		종목단체	비 고
가입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종목	정상단체 (25개 종목)	검도, 골프, 궁도, 농구, 당구, 배구, 배드민턴, 볼링, 보디빌딩, 복싱, 사격, 승마, 소프트테니스, 수영, 산악, 우슈, 육상, 유도, 축구, 탁구, 테니스, 태권도, 씨름, 바둑, 야구소프트볼
	일반단체	정상단체 (19개 종목)	주짓수, 게이트볼, 걷기, 국학기공, 그라운드골프, 피구, 드론항공, 빙상, 승마, 족구, 체조, 파크골프, 합기도, 패러글라이딩, 해동검도, 킥복싱, 수중핀수영, 동계스키, 수상스키웨이크보드
		관리단체 및 선거진행 단체 (2개 종목)	관리단체 : 밸리댄스 선거 미 진행 : 자전거
미 가입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종목	역도	

3 예산계획

(단체보조금) 82,800천원(47개 종목단체)

제31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지원

- ◇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를 통하여 74만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건강한 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1 개요

- 일 시 : 9. 30.(화) 10:00
- 개최규모 : 16개 읍면동 2,500여명
- 장 소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
- 예산액 : 110,000천원

2 추진계획

【74만 시민이 참여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 주요행사 : 기념식 행사 및 읍면동 문화체육공연
- 명랑운동회, 장기자랑 등 시민 참여 중심의 행사 진행
- 지역에 대한 소속감 부여로 지역에 대한 애향심 및 지역 공동체 기반 마련

3 예산계획

- (사무관리비) 13,000천원(단체복, 심사위원수당 등)
- (공공운영비) 2,000천원(보험료)
- (행사운영비) 83,800천원(트로피, 렌탈, 현수막 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천원(개최 운영 회의비)
- (행사실비보상금) 10,000천원(시상금)

운 영 팀
[생활체육]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지원

- ◇ 관외 대회 참가 및 관내 대회 개최 지원을 통한 우리 시 종목단체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

1 개요

- 기 간 : 3월 ~ 11월 / 9개월간
- 장 소 : 해당 대회 개최지 및 관내 체육시설
- 대 상 : 49개 종목단체 70,000여명
- 예 산 액 : 204,370천원
- 주최/주관 : 남양주시체육회 / 남양주시종목단체

2 추진계획

【생활체육 대회 참가 기회 제공 평준화】

- 종목별 협의(참가인원 등)를 통한 형평성 있는 대회 지원
 - 각종 대회(전국, 도 단위, 시·군 대회 등) 참가 지원
 - 관내 대회 개최 지원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적 실행 가능한 예산 편성 및 투명한 관리

3 예산계획

- (일반운영비) 10,200천원(대관료, 보험료 등)
- (여 비) 680천원
- (업무추진비) 1,200천원(종목단체 격려물품 등)
- (단체보조금) 192,290천원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체육대회 개최 지원

- ◇ 의장기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우리시 체육 동호인의 기량향상과 대회 출전 기회 제공으로 동호인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1 개요

- 기 간 : 4월 ~ 6월 / 3개월간
- 장 소 : 관내 체육시설
- 대회규모 : 15개 종목단체 8,300여명
- 예 산 액 : 100,000천원
- 주최/주관 :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체육회 / 남양주시종목단체

2 추진계획

【가족단위, 여성, 청소년 대상 동호인 참여 확장】

- 주요 분야별 종목단체 선정에 따른 차등 지급
 - * 가족단위, 여성 동호인, 청소년, 비인기 종목 등
- 종목 단체별 대회 분산 개최 및 종목별 개회식 진행

3 예산계획

- (공공운영비) 8,100천원(보험료)
- (행사운영비) 11,000천원(트로피, 대관료)
- (업무추진비) 900천원
- (단체보조금) 80,000천원

권역별 걷기대회 개최 지원

- ◇ 시민 걷기운동 보급 및 16개 읍·면·동 걷기 코스를 활용한 시민참여 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요

- 기 간 : 4월 ~ 11월 / 8개월간
- 장 소 : 16개 읍·면·동 대회 개최지
- 대회규모 : 16개 읍·면·동 5,000여명
- 예 산 액 : 96,000천원
- 주최/주관 : 남양주시체육회 / 남양주시걷기연맹

2 추진계획

【걷기를 통한 지역 주민과 즐기는 대회 마련】

-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한 체험부스 운영 및 볼거리(공연 등) 제공으로 시민 참여 중심의 대회 진행
- 대회 개최 시 안전사고(압사, 온열 질환 등)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대책 마련 * 구급차(간호사) 및 구간별 인력 배치

3 예산계획

(단체보조금) 96,000천원

제36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지원

- ◇ 생활스포츠 보급 및 지역·계층간 우정과 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한 명랑하고 질서 있는 사회기풍 조성

1 개요

- 기 간 : 9. 26.(금) ~ 28.(일) / 3일간
- 장 소 : 파주시 일원
- 대회규모 : 26개 종목(정식 22개, 시범 4개)
- 참가인원 : 22개 종목 589명(임원 62명, 선수 527명) * 2024년 기준
- 예 산 액 : 135,300천원
- 주최/주관 : 경기도체육회 / 파주시, 파주시체육회

2 추진계획

【시범 종목 참가 독려로 지원 확대】

- 정식(22개) 전 종목 참가를 목표
- 원활한 대회참가를 위한 종목별 필수 경비 지원
- 종목별 현지 격려를 통한 사기진작 도모

3 예산계획

- (일반운영비) 27,510천원(단체복, 입장식 행사비, 보험료, 현수막 등)
 (여 비) 5,920천원
 (업무추진비) 16,050천원(격려만찬, 격려금, 격려물품 등)
 (단체보조금) 85,820천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 ◇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 복지 실현의 기틀 마련

1 개요

- 기간 : 3월 ~ 10월 / 8개월간
- 장소 : 남양주시 일원
- 대상 : 남양주시민 누구나
- 예산액 : 160,000천원
- 주최/주관 : 남양주시체육회

2 추진계획

【스포츠복지 참여기회 확대】

- 운영교실 : 광장체조(12개소), 생활체육 아카데미(16개소)
- 소외지역 신설을 통한 생활체육 교실 확대
- 청소년 대상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활성화

3 예산계획

- (보 수) 79,900천원(강사수당)
- (사무관리비) 11,570천원(엠프수리, 용품구입 등)
- (공공운영비) 7,630천원(보험료)
- (행사운영비) 10,140천원(대관료, 현수막 등)
- (일반보전금) 50,760천원(재능기부 수당)

남양주시장기 에코랜드 먹골배 테니스 대회 개최 지원

- ◇ 대회 개최를 통하여 우리 시 테니스 동호인 경기력 향상 및 테니스 동호인 저변 확대

1 개요

- 기 간 : 10월 중
- 장 소 : 관내 테니스장
- 참가인원 : 500여명
- 예 산 액 : 10,000천원
- 주최/주관 : 남양주시체육회 / 별내면체육회

2 추진계획

【관내 동호인 인프라 활용 극대화 하여 지역민 대회 조성】

- 대회 개최를 위한 행정적(대관, 보험가입 등) 업무 지원
- 다양한 채널(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
- 우리 지역 특산품(먹골배) 홍보를 통한 스포츠와 지역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롤 모델 정착

3 예산계획

(단체보조금) 10,000천원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 ◇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를 통해 스포츠 교류의 장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동호인 간의 화합을 도모 하고자 함

1 개요

- 기 간 : 4. 24.(목) ~ 27.(일) / 4일간
- 장 소 : 전라남도 일원
- 참가인원 : 13개 종목 총 51명 * 2024년 기준
- 예 산 액 : 8,000천원
- 주최/주관 : 대한체육회 / 전라남도, 전라남도체육회

2 추진계획

【생활체육 22연속 최다종목 우승 기여】

-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는 우리 시 선수들의 참가 지원
- 생활체육인들의 동기 부여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격려금 지급

3 예산계획

(일반운영비) 395천원

(여 비) 725천원

(업무추진비) 6,880천원(격려만찬, 격려금, 격려물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운영

- ◇ 관내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체육활동 확산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1 개요

- 기 간 : 1월 ~ 12월 / 연간
- 장 소 : 남양주시 일원
- 대 상 : 남양주시민 누구나
- 지도자현황 : 12명(일반 6명, 어르신 6명)
- 예 산 액 : 388,752천원 * 국비 194,376천원 / 도비 97,188천원 / 시비 97,188천원
- 주최/주관 : 남양주시체육회

2 추진계획

【16개 읍·면·동 균형적 교실운영】

- 관내 주민 생활체육활동 대면(현장) 지도 * 1일 2개소 3회 이상
- 신규 지도 장소 적극 발굴 및 생활체육 업무
 - * 생활체육 사업 기획 및 보급, 동호인 활동 조사 및 관리, 상담 등

3 예산계획

(인 건 비) 386,784천원(생활체육지도자 12명)
(일반운영비) 1,968천원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운영

◇ 주말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스포츠 활성화 및 학생건강 증진

1 개요

- 기간 : 4월 ~ 12월 / 9개월간
- 장소 : 해당 학교 내 운동장 및 체육관 및 체육시설
- 대상 : 초·중·고등학교 학생
- 운영현황 : 13개소(학교 안 10개소, 학교 밖 3개소) * 2024년 기준
- 예산액 : 56,000천원 * 국비 39,200원 / 시비 16,800천원
- 주최/주관 : 대한체육회, 경기도체육회 / 남양주시체육회

2 추진계획

【지속 가능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 모델 확립】

- 학교 안 프로그램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협조를 통한 학교별 참가신청 접수
- 학교 밖 프로그램
 - 종목 선정 및 체육시설 협의(개소별 시설계약 및 프로그램 운영)

3 예산계획

- (인 건 비) 25,880천원(강사수당)
- (일반운영비) 29,660천원(보험료, 현수막, 용품비 등)
- (여 비) 260천원
- (업무추진비) 200천원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 초등스포츠클럽의 활성화로 평생운동 생활습관 형성 및 건강 체력 향상

1 개요

- 기간 : 3월 ~ 12월 / 10개월간
- 장소 : 관내 초등학교 체육시설
- 대상 : 관내 초등학교 3 ~ 6학년
- 운영개소 : 33개교 65개 클럽 * 2024년 기준
- 예산액 : 122,540천원 * 시비 30,635천원 / 도비 30,635천원 / 교육청 61,270천원
- 주최/주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 남양주시체육회

2 추진계획

【지역 사회 스포츠 문화 활성화 및 참여 학생 수 증가】

- 학교 중심형(학교시설 이용) 운영 및 물품 지원
 - * 아침 스포츠클럽 및 방과 후 스포츠클럽
- 생활스포츠와 연계 될 수 있는 종목 권장
- 전국체육대회, 동계체육대회 관련 종목 및 비경쟁 종목(체조 등) 운영

3 예산계획

(인 건 비) 106,300천원(강사수당)

(일반운영비) 16,240천원(클럽 운영비, 보험료 등)

전문체육육성팀
[엘리트 체육]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지원

- ◇ 2025년 경기도체육대회 “종합 8위” 목표달성을 위한 우리시 종목별 대표 선수들의 훈련 및 현지대회 참가를 지원 하고자 함

1 개요

- 기 간 : 5. 15.(목) ~ 17.(토) / 3일간
- 대회규모 : 경기도 31개 시·군 12,000여명
- 참가인원 : 26개 종목 405명 * 2024년 기준
- 장 소 : 가평군 일원
- 예 산 액 : 460,000천원
- 주최/주관 : 경기도, 경기도체육회 / 가평군, 가평군체육회

2 추진계획

【종합 8위 달성 목표】

- 종목별 훈련 및 현지격려를 통한 선수들의 사기 진작 도모
- 2023년~2024년 종목별 종합순위에 따른 훈련비, 현지경비 차등 지원
- 선수단 단합을 위한 30주년 기념 로고 단체복 제작 및 해단식 개최

3 예산계획

- (일반운영비) 88,280천원(단체복, 입장식, 해단식 등)
- (여 비) 7,120천원
- (업무추진비) 22,000천원(격려만찬, 격려금, 격려물품 등)
- (일반보전금) 92,400천원(감독 및 선수 수당)
- (단체보조금) 250,200천원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선수 육성지원

- ◇ 관내 경기실적이 우수한 우리시 종목별 대표 선수들을 지원하여 “종합 8위” 순위 상승을 목표로 남양주시 전문체육 위상을 제고 하고자 함

1 개요

- 기 간 : 1월 ~ 10월 / 10개월간
- 대 상 : 22개 종목 130여명
- 예 산 액 : 330,000천원

2 추진계획

【우수선수 대회 기여도 상승 목표(70%)】 * 2024년 60% 종합성적 기여

- 종합순위 상승을 위한 관내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 관내 우수선수 확보 및 실력 향상을 위한 실무자 지원
- 경기실적에 따른 우수선수 차등 지원(1등급 ~ 8등급)

3 예산계획

- (공공운영비) 2,000천원
- (업무추진비) 2,000천원
- (행사실비지원금) 326,000천원(수당)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역량 강화지원

- ◇ 경기도체육대회 출전하는 종목별 단체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및 선발전 등을 지원 하고자 함

1 개요

- 기 간 : 1월 ~ 12월 / 연간
- 대 상 : 경기도체육대회 24개 정식 종목 단체
- 장 소 : 관내 종목별 체육시설
- 예 산 액 : 40,000천원

2 추진계획

【종목별 전력 보강】

- 온라인, 오프라인을 활용한 종목별 선수 모집 선발전 개최
- 24개 전 종목 훈련용품지원
-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3 예산계획

- (일반운영비) 2,440천원
- (업무추진비) 1,560천원
- (단체보조금) 36,000천원

전국체육대회(동·하계) 참가지원

◇ 경기도 대표로 전국 대회에 참가한 우리시 선수들의 입장을 위하여 동계 및 하계 대회 참가 지원을 하고자 함

1 개요

구 분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기 간	2. 18.(화) ~ 21.(금)	10. 17.(금) ~ 23.(목)
대회규모	17개 시·도 8개 종목	17개 시·도 49개 종목
참가인원	4개 종목 27명* 2024년 기준	10개 종목 19명* 2024년 기준
장 소	강원도 일원	부산광역시 일원
예 산 액	19,630천원	
주 최	대한체육회	

2 추진계획

【제106회 동계체전 22연패! 제106회 하계체전 4연패! 기여】

- 경기도 대표로 선발된 우리시 선수의 우수한 성적을 위한 참가 지원
- 격려금 지원을 통한 선수 및 지도자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 현지대회 격려를 통한 우리시 선수들의 자긍심 고취

3 예산계획

(일반운영비) 620천원

(여 비) 1,160천원

(업무추진비) 17,850천원(격려만찬, 격려금, 격려물품 등)

전국 소년체육대회 참가지원

◇ 경기도 대표로 전국 대회에 참가한 우리시 청소년 선수의 우수한 성적을 위한 대회 지원을 하고자 함

1 개요

- 기간 : 5. 24.(토) ~ 27.(화) / 4일간
- 대회규모 : 17개 시·도 36개 종목 19,000여명(초등, 중등부)
- 참가인원 : 8개 종목 14개 소속 20명 * 2024년 기준
- 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
- 예산액 : 8,000천원
- 주최/주관 : 대한체육회 /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체육회

2 추진계획

【종목별 전문체육선수 조기 발굴】

- 전문체육 청소년들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우리시 체육발전 제고
- 격려금 지원을 통한 선수 및 지도자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 관내 청소년 선수 및 학교운동부 선수 현황 확보

3 예산계획

(일반운영비) 440천원
(여비) 900천원
(업무추진비) 6,660천원(격려금)

전문체육대회 입상지원

- ◇ 우리시 대표로 국제 및 국내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들의 동기 부여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을 지급 하고자 함

1 개요

- 기 간 : 1월 ~ 12월 / 연간
- 대 상 :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출전 선수
- 예 산 액 : 50,000천원

2 추진계획

- 우리시 대표로 국제 및 국내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들의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위한 포상금 지급
- 국제 및 국내대회에 한하여 경기실적에 따른 포상금 지급

3 예산계획

(일반보전금) 50,000천원

지역기반 스포츠클럽(G-스포츠클럽) 운영지원

- ◇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감소에 따른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고 학교 운동부 지역 연계형 선수 양성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1 개요

- 기 간 : 1월 ~ 12월 / 연간
- 사업규모 : 4개 종목 6개 클럽 100여명

운영종목

육상(초)	수영(초·중)	볼링(초)	배드민턴(초)	배드민턴(중)	배드민턴(고)
-------	---------	-------	---------	---------	---------

- 장 소 : 관내 체육시설
- 예 산 액 : 280,000천원
- 주최/주관 : 경기도교육청 / 남양주시체육회

2 추진계획

【남양주시와 함께하는 스포츠클럽의 안정적 정착】

- 운동에 소질이 있는 관내 학생선수 발굴·육성하여 진로 개척
- 국가대표 출신의 강사진으로 질 높은 교실운영
- 종목별 전년도 대비 대회참가 증가로 입상실적 향상

3 예산계획

- (인 건 비) 190,160천원(강사수당)
- (일반운영비) 86,440천원(대관료, 회계감사비)
- (여 비) 1,000천원
- (업무추진비) 2,400천원(격려물품 등)

남양주시체육회장배 체육대회 개최지원

- ◇ 체육회를 대표하는 특색있는 체육회장배 대회 개최를 통하여 우리시 취약종목 유·청소년들이 생활 체육에 가까워 질 수 있는 대회 개최

1 개요

- 기간 : 6월 ~ 11월 / 6개월간
- 대회규모 : 4개 종목 1,000여명
- 장소 : 관내 체육시설
- 예산액 : 30,000천원
- 주최/주관 : 남양주시체육회 / 남양주시종목단체

2 추진계획

【취약종목 및 유·청소년 대회참가 기회 제공】

- 청소년(초·중·고), 가족 전 연령층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 개최
- 비인기 종목단체의 대회개최 운영 추진
- 대회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3 예산계획

(단체보조금) 30,000천원

남양주시장기 전국 배드민턴대회 개최지원

- ◇ 전국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1 개요

- 기 간 : 5. 24.(토) ~ 25.(일) / 2일간
- 대회규모 : 600여개 팀 2,500여명
- 장 소 : 화도체육문화센터
- 예 산 액 : 20,000천원
- 주최/주관 : 남양주시체육회 / 남양주시 배드민턴협회

2 추진계획

【전국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축제의 장】

- 전국 최고의 배드민턴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사전준비를 통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
- 체육회 및 협회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대회준비

3 예산계획

(단체보조금) 20,000천원

[2025년 연간 사업일정]

월별	사업명	기간	장소
1월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교실 운영	1월 ~ 12월	관내 체육시설 등
	지역기반 스포츠클럽(G-스포츠클럽) 사업운영	1월 ~ 12월	관내 체육시설
2월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월 18일 ~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정기이사회	2월 7일	시청 2층 여유당
	정기총회	2월 28일	시청 2층 여유당
	남양주시 태권도협회 태권도시범단 운영	2월 ~ 11월	청소년수련관
3월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3월 ~ 10월	관내 체육시설
	제15회 남양주시장배 동호인 클럽리그대회	3월 ~ 11월	관내 체육시설
	종목별 단체육성지원	3월 ~ 11월	-
	생활체육 종목활성화 지원	3월 ~ 11월	전국 일원
	초등스포츠클럽 운영	3월 ~ 12월	관내 초등학교
4월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지원	4월 24일 ~ 27일	전라남도 일원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체육대회	4월 ~ 6월	남양주시 일원
	제18회 시장기체육대회 개최지원	4월 ~ 11월	관내 체육시설
	권역별 건기대회 개최	4월 ~ 11월	남양주시 일원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운영	4월 ~ 12월	관내 학교 및 체육시설
5월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지원	5월 15일 ~ 17일	가평군 일원
	제11회 남양주시장기전국배드민턴 대회	5월 24일 ~ 25일	화도체육문화센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5월 24일 ~ 27일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
	남양주시체육회 임원·회원단체 워크숍	5월 중	미정
6월	제2회 남양주시체육회장배 개최지원	6월 ~ 11월	관내 체육시설
7월	-	-	-
8월	태권도협회 태권도시범단 하계 전지 훈련	8월 중	미정
9월	제31회 남양주 시민의 날 체육문화 축제	9월 20일	남양주시체육문화센터
	제36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지원	9월 26일 ~ 28일	파주시 일원
	경기도체육대회 선수단 역량강화 지원	9월 ~ 11월	관내 체육시설
10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10월 17일 ~ 23일	부산광역시 일원
	남양주시장기 에코랜드 먹골배 테니스대회	10월 중	남양주시 일원
11월	제9회 여성스포츠대회 개최지원	11월 중	관내 체육시설
12월	남양주시체육회 체육인의 밤	12월 중	남양주시체육문화센터

2025년 수입·지출 예산(안)

예산총칙(안)

제1조 2025년도 수입지출 예산총액은 5,254,649천원이다. (2025.01.04.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고
합 계	5,254,649	4,833,334	421,315
보조금사업	4,709,391	4,216,183	493,208
일반보조금(시비+기금)	3,685,343	3,184,533	500,810
국비보조금	12,000	86,468	△74,468
국시비보조금	56,000	-	56,000
도비보조금	150,500	150,900	△400
시교육청비보조금	280,000	280,000	0
도시교육청비보조금	122,540	122,540	0
국도시비보조금	388,752	377,486	11,266
도시비보조금	14,256	14,256	0
자체사업	452,302	507,682	△55,380
이사회비, 회원단체	425,919	302,263	123,656
기타수입	26,383	205,419	△179,036
기부금사업	39,815	59,336	△19,521
기부금사업	39,815	59,336	△19,521
출연금	50,138	50,133	5
출연금	50,138	50,133	5
후원금	3,003	-	3,003
후원금	3,003	-	3,003

제2조 수입지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수입지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음.

제4조 계속비사업은 없음, 명시이월사업은 없음

제5조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조례, 규약,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6조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 예산성립 후 남양주시 등으로 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비 전액이 교부된 보조사업은 이사회 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기타 총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을 준용한다.

수 입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장 관 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5,254,649	4,833,334	421,315
보조금수입	4,709,391	4,216,183	493,208
일반보조금(시비+기금)	3,685,343	3,184,533	500,810
시비보조금	3,595,343	3,104,533	490,810
○ 생활체육 단체 육성	1,191,475	1,150,899	40,576
○ 남양주시체육회 사무기기 구입지원	11,800	0	11,800
○ 생활체육 지도자 육성	177,968	154,904	23,064
○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	460,000	400,000	60,000
○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선수 육성 지원	330,000	293,600	36,400
○ 전국 체육대회 참가 지원	19,630	11,630	8,000
○ 소년체전 참가선수단 지원	8,000	5,700	2,300
○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240,000	205,000	35,000
○ 의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100,000	100,000	0
○ 체육회장배 체육대회 개최 지원	30,000	20,000	10,000
○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육성 지원	70,000	50,000	20,000
○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지원	135,300	120,000	15,300
○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지원	8,000	0	8,000
○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160,000	150,000	10,000
○ 남양주시장기 전국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원	20,000	20,000	0
○ 남양주시 태권도 협회 태권도 시범단 운영 지원	130,000	100,000	30,000
○ 남양주시장기 에코랜드·먹골배 테니스대회 개최 지원	10,000	10,000	0
○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지원	204,370	180,000	24,370
○ 종목별 단체육성 지원	82,800	82,800	0
○ 권역별 걷기대회 개최 지원	96,000	0	96,000
○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지원	110,000	0	110,000
체육진흥기금	90,000	80,000	10,000
○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선수 선발전 개최지원	40,000	40,000	0

수 입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장 관 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전문체육대회입상지원	50,000	40,000	10,000
국비보조금	12,000	86,468	△74,468
국비보조금	12,000	74,468	△62,468
○ 시군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12,000	12,000	0
국시비보조금	56,000	0	56,000
국시비보조금	56,000	0	56,000
○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운영	56,000	0	56,000
도비보조금	150,500	150,900	△400
도비보조금	150,500	150,900	△400
○ 경기도 체육진흥 공모사업	100,000	100,000	0
○ 경기스포츠클럽 육성지원	30,500	30,900	△400
○ 경기도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	20,000	20,000	0
시교육청비보조금	280,000	280,000	0
시교육청비보조금	280,000	280,000	0
○ 지역기반 스포츠클럽(G-스포츠클럽) 운영지원	280,000	280,000	0
도시교육청비보조금	122,540	122,540	0
도시교육청비보조금	122,540	122,540	0
○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	122,540	122,540	0
국도시비보조금	388,752	377,486	11,266
국도시비보조금	388,752	377,486	11,266
○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194,376	188,743	5,633
○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194,376	188,743	5,633
도시비보조금	14,256	14,256	0
도시비보조금	14,256	14,256	0
○ 일반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14,256	14,256	0
자체 수입	452,302	507,682	△55,380
이사회비,회원단체	425,919	302,263	123,656

수 입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장 관 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이사회비	353,542	269,133	84,409
○ 이사회비	172,000	109,000	63,000
○ 적립금(예금) 및 이자	125,299	125,171	128
○ 순세계잉여금	56,203	34,922	21,281
○ 공공예금 이자수입	40	40	0
회원단체회비	72,377	33,130	39,247
○ 회원단체 회비	60,000	20,520	39,480
○ 순세계잉여금	12,360	12,607	△247
○ 공공예금 이자수입	17	3	14
기타수입	26,383	205,419	△179,036
체육꿈나무 육성기금	26,383	61,419	△35,036
○ 순세계잉여금	26,350	61,349	△34,999
○ 공공예금 이자수입	33	70	△37
기부금 수입	39,815	59,336	△19,521
기부금 사업	39,815	59,336	△19,521
기부금 운영	39,815	59,336	△19,521
○ 순세계잉여금	39,769	59,264	△19,495
○ 공공예금 이자수입	46	72	△26
출연금	50,138	50,133	5
출연금	50,138	50,133	5
○ 순세계잉여금	50,094	50,093	1
○ 공공예금 이자수입	44	40	4
후원금	3,003	0	3,003
후원금	3,003	0	3,003
○ 순세계잉여금	3,000	0	3,000
○ 공공예금 이자수입	3	0	3

지출 예산 명세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남양주시체육회		5,254,649	4,833,334	421,315
보조금사업		4,709,391	4,216,183	493,208
일반보조금 사업		3,595,343	3,104,533	490,810
생활체육단체 육성		1,191,475	1,150,899	40,576
101 인건비		1,004,643	946,702	57,941
01 보수		1,004,643	946,702	57,941
○ 기본급		599,731	583,664	16,067
○ 정근수당		22,803	0	22,803
○ 정근수당 가산금		7,800	0	7,800
○ 수당 등		104,950	103,206	1,744
· 가족수당		7,680	7,680	0
- 배우자	40,000원*7명*12월	3,360	3,840	△480
- 자녀	50,000원*4명*12월	2,400	1,440	960
- 기타가족	20,000원*8명*12월	1,920	2,400	△480
· 초과근무수당	22,532원*23.98시간*15명*12월	97,270	95,526	1,744
○ 정액급식비	140,000원*17명*12월	28,560	28,560	0
○ 명절휴가비	(599,731,000원/12월)*60%*2회	59,973	58,367	1,606
○ 연가보상비	133,363원*7일*17명	15,901	14,831	1,070
○ 퇴직적립금	871,998,000원*1/12월	72,667	69,409	3,258
○ 4대보험 부담금		92,258	88,665	3,593
· 국민연금	871,998,000원*4.5%	39,240	37,481	1,759
· 국민건강보험	871,998,000원*3.545%	30,912	29,527	1,385
· 장기요양보험	30,912,330원*12.95%	4,003	3,824	179
· 고용보험	871,998,000원*1.15%	10,028	9,579	449
· 산재보험	871,998,000원*0.926%	8,075	8,254	△179
201 일반운영비		112,352	136,817	△24,465

지출 예산 명세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69,198	93,703	△24,505
○ 일반수용비		16,959	39,128	△22,169
· 사무용품 및 홍보물 제작 등		5,080	6,120	△1,040
○ 위탁교육(법정의무교육)	500,000원*4회	2,000	2,000	0
○ 위원회 참석수당	100,000원*3명*3회	900	900	0
○ 급식비	9,000원*17명*6식*12월	11,016	9,264	1,752
○ 사무실 임차료	24,277,000원*1회	24,277	24,277	0
○ 관리용역비		14,046	18,134	△4,088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150,000원*12월	1,800	5,924	△4,124
· 퇴직연금운용 수수료	1,800,000원*1회	1,800	1,800	0
· 지문인식기·프로그램 사용료	70,000원*12월	840	840	0
· 회계 및 인사 프로그램	G20 1,210,000원*1회 위하고 396,000원*1회	1,606	1,570	36
· 회계감사 수수료	4,000,000원*2회	8,000	8,000	0
02 공공운영비		26,154	26,114	40
○ 공공요금 및 제세		19,394	19,466	△72
· 전기요금	725,000원*12월	8,700	8,700	0
· 통신요금(전화 및 인터넷)	446,250원*12월	5,595	4,800	795
· 우편요금	2,212원*63통*12월	1,673	1,966	△293
· 자동차세	327,000원*3대	981	800	181
· 환경개선부담금	60,000원*2대*2회	240	360	△120
· 차량보험료	721,660원*3대	2,165	2,800	△635
· 회계재정보험	10,000원*1회*4명	40	40	0
○ 차량선박비		6,760	6,648	112
· 차량유류비	1,800원*3대*61.72리터*12월	4,000	3,888	112
· 차량유지관리비		2,760	2,760	0
04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7,000	17,000	0

지출 예산 명세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000,000원*17명	17,000	17,000	0
202 여비		17,400	15,300	2,100
01 국내여비		15,300	13,300	2,000
○ 국내여비	25,000원*17명*3일*12월	15,300	13,300	2,000
03 국외여비		2,100	2,000	100
○ 국외여비	1,050,000원*2명	2,100	2,000	100
203 업무추진비		17,120	12,120	5,000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320	2,320	0
○ 직원사기진작 업무추진	80,000원*29명	2,320	2,32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5,000	5,000
○ 체육회 운영 업무추진		10,000	5,000	5,00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0	4,800	0
○ 사무국 운영	400,000원*12월	4,800	4,800	0
204 직무수행경비		39,960	39,960	0
02 직급보조비		39,960	39,960	0
○ 4급(전무)	400,000원*1명*12월	4,800	4,800	0
○ 5급(국장)	250,000원*1명*12월	3,000	3,000	0
○ 6급(과장)	185,000원*1명*12월	2,220	2,220	0
○ 6급(팀장)	185,000원*4명*12월	8,880	8,880	0
○ 7급(대리)	180,000원*1명*12월	2,160	2,160	0
○ 8급(주임)	175,000원*4명*12월	8,400	4,200	4,200
○ 9급(담당)	175,000원*4명*12월	8,400	12,600	△4,200
○ 9급(기사)	175,000원*1명*12월	2,100	2,100	0
생활체육단체 육성(사무기기 구입)		11,800	0	11,800
405 자산취득비		11,800	0	11,800
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1,800	0	11,800

지출예산명세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1,800	0	11,800
- 복사기	5,000,000원*2대	10,000	0	10,000
- 파쇄기	1,800,000원*1대	1,800	0	1,800
생활체육 지도자 육성		177,968	154,904	23,064
101 인건비		122,848	99,784	23,064
01 보수		122,848	99,784	23,064
○ 수당		61,754	53,348	8,406
· 근속수당	50,000원*12명*12월	7,200	7,200	0
· 가족수당		6,480	2,160	4,320
- 배우자	40,000원*6명*12월	2,880	1,440	1,440
- 자녀수당	50,000원*4명*12월	2,400	0	
- 기타가족	20,000원*5명*12월	1,200	720	480
· 활동수당	2,916,666원*12개월	35,000	31,200	3,800
· 초과근무수당	18,158원*5시간*12명*12월	13,074	12,788	286
○ 정액급식비	140,000원*12명*12월	20,160	20,160	0
○ 명절휴가비	500,000원*12명*2회	12,000	0	12,000
○ 연가보상비	96,842원*7일*12명	8,135	7,957	178
○ 퇴직적립금	109,969,000원*1/12월	9,164	7,809	1,355
○ 4대보험 부담금		11,635	10,510	1,125
· 국민연금	109,969,000원*4.5%	4,949	4,217	732
· 국민건강보험	109,969,000원*3.545%	3,898	3,322	576
· 장기요양보험	3,898,401원*12.95%	505	431	74
· 고용보험	109,969,000원*1.15%	1,265	1,672	△407
· 산재보험	109,969,000원*0.926%	1,018	868	150
201 일반운영비		1,100	0	1,100
01 사무관리비		1,100	0	1,100

지출 예산 명세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회계감사비	550,000원*2회	1,100	0	1,100
201 일반운영비		18,020	19,120	△1,100
03 행사운영비		6,020	7,120	△1,100
○ 용품 구입	150,000원*12회	1,800	1,800	0
○ 홍보물 제작	70,000원*60개	4,220	5,320	△1,100
04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2,000	12,000	0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000,000원*12명	12,000	12,000	0
202 여비		21,600	21,600	0
01 국내여비		21,600	21,600	0
○ 활동여비	25,000원*12명*6일*12월	21,600	21,600	0
204 직무수행경비		14,400	14,400	0
02 직급보조비		14,400	14,400	0
○ 직급보조비	100,000원*12명*12월	14,400	14,400	0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		460,000	400,000	60,000
201 일반운영비		88,280	71,880	16,400
01 사무관리비		70,100	56,380	13,720
○ 피복비		68,000	54,400	13,600
· 단체복(선수용)	100,000원*352벌	35,200	24,000	11,200
· 단체복(임·직원용)	100,000원*328벌	32,800	26,400	6,400
○ 임차료	500,000원*2대	1,000	1,000	100
○ 일반수용비(통행료)	50,000원*2회	100	180	△80
○ 회계감사비		1,000	500	500
02 공공운영비		500	400	100
○ 차량선박비		500	400	100
· 차량유류비	2,000원*125리터*2회	500	400	100
03 행사운영비		17,680	15,100	2,580

지출예산명세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개막식 운영비(이벤트 등)		4,000	2,700	1,300
○ 선수 등록비	100,000원*10명	1,000	400	600
○ 현수막	70,000원*30개	2,100	2,100	0
○ 선수 상해보험	7,000원*200명	1,400	1,400	0
○ 해단식(워크숍) 숙박비	65,000원*25개 종목*4명	6,500	7,000	△500
○ 행사운영 지원		2,480	1,300	1,180
○ 사전답사(만찬장 등)		200	200	0
202 여비		7,120	5,920	1,200
01 국내여비		7,120	5,920	1,200
○ 일 비	15,000원*5일*16명	1,200	960	240
○ 숙박료	70,000원*4일*14명	3,920	3,360	560
○ 식 비	25,000원*5일*16명	2,000	1,600	400
203 업무추진비		22,000	20,830	1,17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000	20,830	1,170
○ 참가선수 격려(만찬)	35,000원*200명	7,000	7,000	0
○ 해단식	35,000원*100명	3,500	3,000	500
○ 대회 참가선수 훈련 격려	70,000원*25개 종목	1,750	1,890	△140
○ 현지격려금	300,000원*27개 종목	8,100	8,100	0
○ 입장부격려금	300,000원*1개 종목	300	300	0
○ 대회참가선수 현지 격려(음료 등)	50,000원*27개 종목	1,350	540	810
301 일반보전금		92,400	88,500	3,900
11 행사실비지원금		92,400	88,500	3,900
○ 종목별 감독수당	500,000원*31명	15,500	13,500	2,000
○ 참가선수 훈련수당(교통비 등)	150,000원*290명	43,500	45,000	△1,500
○ 참가선수 출전수당	100,000원*334명	33,400	30,000	3,400
307 민간이전		250,200	212,870	37,330

지출예산명세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04 단체보조금		250,200	212,870	37,330
○ 출전 종목 강화훈련 및 용품구입		181,000	152,120	28,880
· 급식비	9,000원*2식*390명*10일	70,200	62,400	7,800
· 시설사용료 등(골프, 볼링, 사격, 씨름)	4,000,000원*4개 종목	16,000	8,720	7,280
· 용품비	300,000원*316명	94,800	81,000	13,800
○ 숙박비	500,000원*27개 종목	13,500	9,450	4,050
○ 종목별 운영비	500,000원*25개 종목	12,500	8,100	4,400
○ 현지경비(식비 등)	1,600,000원*27개 종목	43,200	43,200	0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선수 육성 지원		330,000	293,600	36,400
201 일반운영비		2,000	3,000	△1,000
02 공공운영비		2,000	3,000	△1,000
○ 보험비	2,000,000원*1회	2,000	3,000	△1,000
203 업무추진비		2,000	3,600	△1,6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	3,600	△1,600
○ 선수 및 관계자 간담회	20,000원*50명*2회	2,000	3,600	△1,600
301 일반보전금		326,000	287,000	39,000
11 행사실비지원금		326,000	287,000	39,000
○ 우수선수 지원금		286,000	243,000	43,000
· 1등급	1,200,000원*7명*4개월	33,600	6,000	27,600
· 2등급	1,000,000원*3명*4개월	12,000	15,000	△3,000
· 3등급	800,000원*59명*4개월	188,800	88,000	100,800
· 4등급	600,000원*4명*3개월	7,200	27,000	△19,800
· 5등급	500,000원*7명*3개월	10,500	22,500	△12,000
· 6등급	400,000원*5명*3개월	6,000	46,000	△40,000
· 7등급	300,000원*9명*3개월	8,100	16,500	△8,400
· 8등급	200,000원*33명*3개월	19,800	22,000	△2,200

지출 예산 명세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실무자 지원금	200,000원*20명*10개월	40,000	44,000	△4,000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		19,630	11,630	8,000
201 일반운영비		620	620	0
01 사무관리비		100	100	0
○ 일반수용비(통행료)	50,000원*2회	100	100	0
02 공공운영비		320	320	0
○ 차량유류비	1,600원*100리터*2회	320	320	0
03 행사운영비		200	200	0
○ 행사운영 지원(현수막 등)	100,000원*2회	200	200	0
202 여비		1,280	1,200	80
01 국내여비		1,280	1,200	80
○ 일 비	15,000원*2일*4명*2회	240	240	0
○ 숙박료	80,000원*1일*4명*2회	640	560	80
○ 식 비	25,000원*2일*4명*2회	400	400	0
203 업무추진비		17,730	9,810	7,92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730	9,810	7,920
○ 선수 및 관계자 간담회	35,000원*42명	1,470	1,610	△140
○ 현지격려금(선수, 감독, 코치)	200,000원*40명*2회	16,000	8,000	8,000
○ 현지격려(음료구입 등)	20,000원*13개종목	260	200	60
소년체전 참가선수단 지원		8,000	5,700	2,300
201 일반운영비		440	280	160
01 사무관리비		290	200	90
○ 일반수용비(통행료)	50,000원*1회	50	50	0
02 공공운영비		240	150	90
○ 차량유류비	1,600원*1대*150리터	240	150	90
03 행사운영비		150	80	70

지출 예산 명세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행사운영 지원(현수막 등)	75,000원*2회	150	80	70
202 여비		900	600	300
01 국내여비		900	600	300
○ 일 비	15,000원*2일*6명	180	120	60
○ 숙박료	70,000원*1일*6명	420	280	140
○ 식 비	25,000원*2일*6명	300	200	100
203 업무추진비		6,660	4,820	1,84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660	4,820	1,840
○ 선수 및 지도자 격려금	200,000원*30명	6,000	4,500	1,500
○ 소년체전 참가자 간담회(격려 음료 등)	30,000원*22명	660	320	340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240,000	205,000	35,000
201 일반운영비		50,400	56,370	△5,970
01 사무관리비		17,500	13,000	4,500
○ 상장제작	7,000원*2,500개	17,500	13,000	4,500
02 공공운영비		16,100	10,250	5,850
○ 보험료(주최자배상책임보험)	16,100,000원*1회	16,100	10,250	5,850
03 행사운영비		16,800	33,120	△16,320
○ 트로피, 메달 제작	100,000원*42개종목*4개	16,800	13,120	3,680
203 업무추진비		600	1,030	△43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	1,030	△430
○ 종목단체 간담회	8,000원*10명*5회	400	400	0
○ 종목 격려	25,000원*8개 종목	200	0	200
307 민간이전		189,000	147,600	41,400
04 단체보조금		189,000	147,600	41,400
○ 종목별 지원	4,500,000원*42개 종목	189,000	147,600	41,400
의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100,000	100,000	0

지출 예산 명세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19,100	19,200	△100
02 공공운영비		7,600	6,600	1,000
○ 보험료(주최자배상책임보험)	7,600,000원*1회	7,600	6,600	1,000
03 행사운영비		11,500	12,600	△1,100
○ 우승기, 메달, 트로피 등	500,000원*15종목	7,500	6,000	1,500
○ 시설 대관료	400,000원*10종목	4,000	6,600	△2,600
203 업무추진비		900	800	1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	800	100
○ 종목단체 정담회 및 격려	30,000원*2회*15종목	900	800	100
307 민간이전		80,000	80,000	0
04 단체보조금		80,000	80,000	0
○ 종목별 보조금 지원	5,000,000원*16종목	80,000	80,000	0
체육회장배 체육대회 개최 지원		30,000	20,000	10,000
307 민간이전		30,000	20,000	10,000
04 단체보조금		30,000	20,000	10,000
○ 종목별 단체보조금	5,000,000원*6개대회	30,000	20,000	10,000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육성 지원		70,000	50,000	20,000
201 일반운영비		19,000	14,300	4,700
02 공공운영비		8,000	5,500	2,500
○ 보험료(주최자배상책임보험)	1,000,000원*8개종목	8,000	5,500	2,500
03 행사운영비		11,000	8,800	2,200
○ 현수막 제작	125,000원 *8개	1,000	800	200
○ 대관 임차료	1,250,000원*8종목	10,000	8,000	2,000
203 업무추진비		200	0	2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	0	200
○ 종목 격려	25,000원*8개 종목	200	0	200

지출 예산 명세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307 민간이전		50,800	35,700	15,100
04 단체보조금		50,800	35,700	15,100
○ 종목별 보조금 지원	6,350,000원*8종목	50,800	15,700	35,100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지원		135,300	120,000	15,300
201 일반운영비		27,510	26,150	1,360
01 사무관리비		18,950	18,550	400
○ 단체복	80,000원*230벌	18,400	18,000	400
○ 심사위원 수당	100,000원*4명	400	400	0
○ 일반수용비(통행료)	50,000원*3대	150	150	0
02 공공운영비		432	648	△216
○ 차량유류비	1,800원*3대*80리터	432	648	△216
03 행사운영비		8,128	6,952	1,176
○ 입장식 및 행사운영 지원	1,500,000원*1회	1,500	1,342	158
○ 선수 보험료	2,178,000원*1회	2,178	1,800	378
○ 종목별 필승 현수막	70,000원*25개 종목	1,750	1,610	140
○ 사전답사(만찬장 등)	200,000원*1회	200	200	0
○ 차량 렌탈비	500,000원*3대	1,500	1,000	500
○ 차량 렌탈비(입장부 버스임차)	1,000,000원*1대	1,000	1,000	0
202 여비		5,920	5,920	0
01 국내여비		5,920	5,920	0
○ 일 비	15,000원*4일*16명	960	960	0
○ 숙박료	70,000원*3일*16명	3,360	3,360	0
○ 식 비	25,000원*4일*16명	1,600	1,600	0
203 업무추진비		16,050	14,890	1,16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50	14,890	1,160
○ 선수 격려만찬	35,000원*200명	7,000	7,000	0

지출 예산 명세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대회참가선수 현지 격려(음료 등)	50,000원*25개 종목	1,250	690	560
○ 현지격려금	300,000원*25개 종목	7,500	6,900	600
○ 입장부 격려금	300,000원*1회	300	300	0
307 민간이전		85,820	73,040	12,780
04 단체보조금		85,820	73,040	12,780
○ 교통비	10,000원*2일*480명	9,600	9,600	0
○ 숙박비	80,000원*1박*80실	6,400	12,600	△6,200
○ 급식비	9,000원*3식*2일*480명	25,920	23,040	2,880
○ 용품비	80,000원*520명	41,600	25,500	16,100
○ 운영비	100,000원*23개종목	2,300	2,300	0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8,000	0	8,000
201 일반운영비		395	0	395
01 사무관리비		60	0	60
○ 일반수용비(통행료)	60,000원*1회	60	0	60
02 공공운영비		135	0	135
○ 차량유류비	1,500원*1대*90리터	135	0	135
03 행사운영비		200	0	200
○ 행사운영 지원(현수막 등)	200,000원*1회	200	0	200
202 여비		725	0	725
01 국내여비		725	0	725
○ 일 비	12,500원*2일*5명	125	0	125
○ 숙박료	70,000원*1일*5명	350	0	350
○ 식 비	25,000원*2일*5명	250	0	250
203 업무추진비		6,880	0	6,88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880	0	6,880
○ 현지격려금	200,000원*33명	6,600	0	6,600

지출예산명세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현지격려(음료구입 등)	280,000원*1회	280	0	280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160,000	150,000	10,000
101 인건비		79,900	73,200	6,700
01 보수		79,900	73,200	6,700
○ 와부읍 외 8개 읍면동	50,000원*10명*133회	66,500	60,800	5,700
○ 생활체육교실 강사비		13,400	12,400	1,000
· 패밀리볼링 아카데미(주1회)	50,000원*2시간*8회*3개소*2명	4,800	4,800	0
· 건강마라톤 아카데미(주1회)	50,000원*2시간*28회*2명	5,600	5,600	0
· 리듬체조 아카데미(주1회)	50,000원*2시간*30회*1명	3,000	0	3,000
201 일반운영비		29,340	31,800	△2,460
01 사무관리비		11,570	6,316	5,254
○ 앰프대여(수리 등)	320,000원*4회	1,280	1,280	0
○ 테니스교실 등 용품구입비	4,995,000원*2회	9,990	5,036	4,954
○ 심사위원 수당	100,000원*3명	300	0	300
02 공공운영비		7,630	8,268	△638
○ 보험료(주최자배상책임보험)	7,630,000원*1회	7,630	8,268	△638
03 행사운영비		10,140	17,216	△7,076
○ 현수막(교실, 홍보)	70,000원*52식	3,640	4,800	△1,160
○ 패밀리볼링교실(시설사용료)	10,000원*3개소*8회*20명	4,800	3,840	9,600
○ 리듬체조 아카데미(시설사용료)	22,000원*30회	660	0	
○ 사무용품(수료증 제작)	520,000원*2회	1,040	0	
301 일반보전금		50,760	45,000	5,760
11 행사실비지원금		50,760	45,000	5,760
○ 휴면북 강사수당		50,400	45,000	5,400
· 주강사	30,000원*2시간*14회*12개소*3기수	30,240	27,000	3,240
· 보조강사	10,000원*2시간*2명*14회*12개소*3기수	20,160	18,000	2,160

지출 예산 명세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자문단 수당	30,000원*2시간*6회*1명	360	0	360
남양주시장기 전국배드민턴 대회 개최 지원		20,000	20,000	0
307 민간이전		20,000	20,000	0
04 단체보조금		20,000	20,000	0
○ 전국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원		20,000	20,000	0
남양주시 태권도 협회 태권도 시범단 운영 지원		130,000	100,000	30,000
101 인건비		25,000	29,700	△4,700
01 보수		25,000	29,700	△4,700
○ 코치수당	50,000원*25시간*10개월*2명	25,000	29,700	△4,700
307 민간이전		105,000	70,300	34,700
04 단체보조금		105,000	70,300	34,700
○ 태권도 시범단 대회 운영 지원	105,000,000원*1회	105,000	70,300	34,700
남양주시장기 에코랜드 먹골배 테니스 대회 개최지원		10,000	10,000	0
307 민간이전		10,000	10,000	0
04 단체보조금		10,000	10,000	0
○ 남양주시장기 에코랜드 먹골배 테니스 대회 개최지원	10,000,000원*1회	10,000	10,000	0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지원		204,370	180,000	24,370
201 일반운영비		10,200	10,000	200
02 공공운영비		2,600	2,100	500
○ 보험료(주최자배상책임보험)	2,600,000원*1회	2,600	2,100	500
03 행사운영비		7,600	7,900	△300
○ 여성활성화대회 개막식		2,000	7,900	△5,900
· 대회운영지원	2,000,000원*1회	2,000	2,300	△300
○ 대관료	400,000원*7개 종목	2,800	0	2,800
○ 트로피 제작	100,000원*4개*7개 종목	2,800	0	2,800
202 여비		680	680	0

지출 예산 명세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01 국내여비		680	680	0
○ 일 비	25,000원*4명*2일	200	200	0
○ 숙박료	70,000원*4명	280	280	0
○ 식 비	25,000원*4명*2일	200	200	0
203 업무추진비		1,200	1,2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	1,200	0
○ 참가자 격려	30,000원*40개 대회	1,200	1,200	0
307 민간이전		192,290	168,120	24,170
04 단체보조금		192,290	168,120	24,170
○ 종목별 대회 참가 및 개최지원	3,720,000원*46종목	171,290	150,620	20,670
○ 여성스포츠대회	3,000,000원*7종목	21,000	17,500	3,500
종목별 단체육성 지원		82,800	82,800	0
307 민간이전		82,800	82,800	0
04 단체보조금		82,800	82,800	0
○ 도민체전 출전종목 육성(종목단체)	200,000원*21개종목*12월	50,400	50,400	0
○ 도민체전 출전종목 육성(미가입단체)	100,000원*12월	1,200	1,200	0
○ 일반종목 육성	100,000원*26개종목*12월	31,200	31,200	0
권역별 걷기대회 개최 지원		96,000	0	96,000
307 민간이전		96,000	0	96,000
04 단체보조금		96,000	0	96,000
○ 권역별 걷기대회 개최 지원	6,000,000원*16개	96,000	0	96,000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지원		110,000	0	110,000
201 일반운영비		98,800	0	98,800
01 사무관리비		13,000	0	13,000
○ 단체복(진행요원 등)	90,000원*140명	12,600	0	12,600
○ 단체복 선정 심사위원 수당	100,000원*4명	400	0	400

지출 예산 명세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02 공공운영비		2,000	0	2,000
○ 보험료(주최자배상책임보험)	2,000,000원*1회	2,000	0	2,000
03 행사운영비		83,800	0	83,800
○ 시민의날 문화 행사 준비 비용(임차 등)	83,800,000원*1회	83,800	0	83,800
203 업무추진비		1,200	0	1,2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	0	1,200
○ 대회 운영 회의비	600,000원*2회	1,200	0	1,200
301 일반보상금		10,000	0	10,000
09 행사실비보상금		10,000	0	10,000
○ 시상금	1,000,000원*10개 분야	10,000	0	10,000
체육진흥기금 사업		90,000	80,000	10,000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역량강화 지원		40,000	40,000	0
307 민간이전		40,000	40,000	0
04 단체보조금		40,000	40,000	0
○ 종목별 단체보조금	1,600,000원*25개 종목	40,000	40,000	0
전문체육대회 입상지원		50,000	40,000	10,000
301 일반보상금		50,000	40,000	10,000
09 행사실비보상금		50,000	40,000	10,000
○ 전문체육대회 입상 지원(경기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10,000,000원*5개 대회	50,000	40,000	10,000
국비보조금 사업		12,000	86,468	△74,468
시군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12,000	12,000	0
101 인건비		12,000	12,000	0
01 보수		12,000	12,000	0
○ 사무국장 지원수당	1,000,000원*12월	12,000	12,000	0
국시비보조금 사업		56,000	0	56,000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운영	국비 70%(39,200천원) 시비 30%(16,800천원)	56,000	0	56,000

지출 예산 명세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101 인건비		25,800	0	25,800
01 보수		25,800	0	25,800
○ 생활체육프로그램 총괄담당 인건비	150,000원*12개월	1,800	0	1,800
○ 학교안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사비	40,000원*10명*2시간*30회	24,000	0	24,000
201 일반운영비		29,740	0	29,740
01 사무관리비		500	0	500
○ 심사위원 수당	100,000원*3명	300	0	300
○ 사무용품	100,000원*2회	200	0	200
02 공공운영비		1,680	0	1,680
○ 학교 안·밖 보험료(주최자책임배상)		1,680	0	1,680
03 행사운영비		27,560	0	27,560
○ 학교 안 프로그램		4,940	0	4,940
· 홍보비(현수막 등)	150,000원*10개교	1,500	0	1,500
· 운동용품 지원	300,000원*10개교	3,000	0	3,000
· 구급키트함	44,000원*10개교	440	0	440
○ 학교 밖 프로그램		22,620	0	22,620
· 시설 사용료(강사수당 포함)	7,240,000원*3개소	21,720	0	21,720
· 홍보비(현수막 등)	300,000원*3개소	900	0	900
202 여비		260	0	260
01 국내여비		260	0	260
○ 현장점검 및 출장여비	20,000원*13회	260	0	260
203 업무추진비		200	0	2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	0	200
○ 강사간담회	200,000원*1회	200	0	200
도비보조금 사업		150,500	150,900	△400
경기도 체육진흥 공모사업		100,000	100,000	0

지출 예산 명세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307 민간이전		100,000	100,000	0
04 단체보조금		100,000	100,000	0
○ 경기도 체육진흥 공모사업	20,000,000원*5개종목	100,000	100,000	0
경기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30,500	30,900	△400
101 인건비		20,000	20,000	0
01 보수		20,000	20,000	0
○ 매니저활동비	400,000원*8개월*2명	6,400	6,400	0
○ 강사수당	50,000원*17시간*2개부*8개월	13,600	13,600	0
201 일반운영비		10,500	10,900	△400
03 행사운영비		10,500	10,900	△400
○ 현수막 등	50,000원*4개*2개 종목	400	400	0
○ 시설사용료	600,000원*8개월*2개 단체	9,600	9,600	0
○ 운영비(사무용품, 용품 등)	500,000원*1회	500	900	△400
경기도 생활체육동호회 리그		20,000	20,000	0
101 인건비		8,500	8,500	0
01 보수		8,500	8,500	0
○ 매니저수당	500,000원*5개월	2,500	2,500	0
○ 심판수당	100,000원*4명*2개부*5회	4,000	4,000	0
○ 보조요원수당	100,000원*2명*2개부*5회	2,000	2,000	0
201 일반운영비		11,000	11,000	0
02 공공운영비		1,000	1,000	0
○ 보험료	200,000원*5회	1,000	1,000	0
03 행사운영비		10,000	10,000	0
○ 대관 임차료	1,600,000원*5회	8,000	8,000	0
○ 운영비(사무용품, 용품 등)	1,000,000원*2개부	2,000	2,000	0
202 여비		100	100	0

지출 예산 명세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01 국내여비		100	100	0
○ 활동여비	20,000원*1명*5회	100	100	0
203 업무추진비		400	4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	400	0
○ 운영 회의 개최	20,000원*10명*2회	400	400	0
시교육청비보조금 사업		280,000	280,000	0
지역기반 스포츠클럽(G-스포츠클럽) 운영지원	시비50%(140,000천원) 교육청50%(140,000천원)	280,000	280,000	0
101 인건비		190,160	190,872	△712
01 보수		190,160	190,872	△712
○ 매니저 기본급(개인부담금포함)	2,500,000원*10개월	25,000	0	25,000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300,000원*10개월	3,000	0	3,000
○ 매니저 연가보상비	1,000,000원*1회	1,000	0	1,000
○ 강사수당		152,760	78,960	73,800
· 육상, 수영, 볼링	120,000원*167회*3명 80,000원*42회*3명	70,200	78,960	△8,760
· 배드민턴1, 2, 3	120,000원*196회*3명 80,000원*50회*3명	82,560	0	82,560
○ 일일근로 수당		8,400	0	8,400
· 육상, 수영, 볼링	12,500원*8시간*8회*3종목	2,400	0	2,400
· 배드민턴 1, 2, 3	12,500원*8시간*20회*3종목	6,000	0	6,000
201 일반운영비		86,440	85,528	912
01 사무관리비		25,740	28,105	△2,365
○ 사무용품비	100,000원*6종목	600	600	0
○ 대관료		23,340	23,275	65
· 배드민턴 1, 2, 3	3,000,000원*3종목	9,000	4,800	4,200
· 육상	234,000원*10개월	2,340	2,400	△60
· 볼링	6,000,000원*2회	12,000	11,475	525
○ 위원회 참석 수당	100,000원*3명*4회	1,200	1,200	0

지출 예산 명세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회계감사비	100,000원*6종목	600	3,030	△2,430
02 공공운영비		3,000	4,800	△1,800
○ 보험료(주최자배상책임보험)	500,000원*6종목	3,000	4,800	△1,800
03 행사운영비		57,700	52,623	5,077
○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비(현지경비)		36,280	28,288	7,992
· 육상	2,160,000*1종목	2,160	2,568	△408
· 수영	4,500,000*1종목	4,500	8,468	△3,968
· 볼링	2,500,000*1종목	2,500	0	2,500
· 배드민턴 1	9,040,000*1종목	9,040	7,486	1,554
· 배드민턴 2	9,040,000*1종목	9,040	2,880	6,160
· 배드민턴 3	9,040,000*1종목	9,040	6,886	2,154
○ 용품비 구입		21,420	23,335	△1,915
· 배드민턴 1	7,140,000원*1종목	7,140	4,606	2,534
· 배드민턴 2	7,140,000원*1종목	7,140	1,211	5,929
· 배드민턴 3	7,140,000원*1종목	7,140	3,042	4,098
202 여비		1,000	0	1,000
01 국내여비		1,000	0	1,000
○ 활동여비	20,000원*1명*50회	1,000	0	1,000
203 업무추진비		2,400	3,600	△1,2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0	3,600	△1,200
○ 각종 회의개최(운영위원회 등)	400,000원*6종목	2,400	3,600	△1,200
도시교육청비 보조금 사업		122,540	122,540	0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	도비 25%(30,635천원) 시비 25%(30,635천원) 교육청 50%(61,270천원)	122,540	122,540	0
101 인건비		106,300	106,300	0
01 보수		106,300	106,300	0
○ 사무보조 기본급(법정부담금 포함)	2,744,400원*10개월	27,444	27,444	0

지출예산명세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연가보상비	11,890원*8시간*9개월	856	856	0
○ 강사비	40,000원*30시간*65개 클럽	78,000	78,000	0
201 일반운영비		16,240	16,240	0
03 행사운영비		16,240	16,240	0
○ 시군체육회 기본운영비	110,000원*2회	220	220	0
○ 클럽 운영비	240,000원*65개 클럽	15,600	15,600	0
○ 도체육회 운영비(전산구축비)		420	420	0
국도시비보조금 사업		388,752	377,486	11,266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국비기금 50%(97,188천원) 도비 25%(48,594천원) 시비 25%(48,594천원)	194,376	188,743	5,633
101 인건비		193,392	187,759	5,633
01 보수		193,392	187,759	5,633
○ 기본급		162,908	158,120	4,788
· 생활체육지도자	2,262,600원*6명*12월	162,908	158,120	4,788
○ 퇴직적립금	2,262,600원*6명	13,576	13,177	399
○ 4대보험 부담금		16,908	16,462	446
· 국민연금	162,908,000원*4.5%	7,331	7,116	215
· 국민건강보험	162,908,000원*3.545%	5,775	5,606	169
· 장기요양보험	5,775,000원*12.95%	748	726	22
· 고용보험	162,908,000원*1.15%	1,873	1,819	54
· 산재보험	162,908,000원*0.724%	1,181	1,195	△14
201 일반운영비		984	984	0
03 행사운영비		984	984	0
○ 지도활동 보험료	164,000원*6명	984	984	0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국비기금 50%(97,188천원) 도비 25%(48,594천원) 시비 25%(48,594천원)	194,376	188,743	5,633
101 인건비		193,392	187,759	5,633

지출 예산 명세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01 보수		193,392	187,759	5,633
○ 기본급		162,908	158,120	4,788
· 생활체육지도자	2,262,600원*6명*12월	162,908	158,120	4,788
○ 퇴직적립금	2,262,600원*6명	13,576	13,177	399
○ 4대보험 부담금		16,908	16,462	446
· 국민연금	162,908,000원*4.5%	7,331	7,116	215
· 국민건강보험	162,908,000원*3.545%	5,775	5,606	169
· 장기요양보험	5,775,000원*12.95%	748	726	22
· 고용보험	162,908,000원*1.15%	1,873	1,819	54
· 산재보험	162,908,000원*0.724%	1,181	1,195	△14
201 일반운영비		984	984	0
03 행사운영비		984	984	0
○ 지도활동 보험료	164,000원*6명	984	984	0
도시비보조금 사업		14,256	14,256	0
일반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도비 30%(4,277천원) 시비 70%(9,979천원)	14,256	14,256	0
101 인건비		14,256	14,256	0
01 보수		14,256	14,256	0
○ 명절수당	500,000원*2회*12명	12,000	12,000	0
○ 법정부담금	1,128,000원*2회	2,256	2,256	0
자체사업		452,302	363,682	88,620
이사회비 사업		353,542	269,133	84,409
이사회 운영		353,542	269,133	84,409
101 인건비		1,200	8,280	△7,080
01 보수		1,200	8,280	△7,080
○ 근속수당	100,000원*12월	1,200	8,280	△7,080
201 일반운영비		156,543	79,682	76,861

지출 예산 명세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25,123	19,262	5,861
○ 일반수용비		2,623	3,962	△1,339
○ 이사회(정기, 임시) 책자유인	40,000원*60부*2회	4,800	3,600	1,200
○ 체육회장상 제작	100,000원*90개	9,000	4,000	5,000
○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100,000원*5명*7회	3,500	2,500	1,000
○ 홍보비(간판,홍보물 등)		4,000	4,000	0
○ 신문구독료	100,000원*12월	1,200	1,200	0
02 공공운영비		2,420	2,420	0
○ 우편요금	4,000원*30명*6회	720	720	0
○ 시·군체육회장단 회비납부	1,000,000원*1회	1,000	1,000	0
○ 임원등기 수수료	700,000원*1회	700	700	0
03 행사운영비		132,000	58,000	74,000
○ 이사 워크숍	650,000원*60명	39,000	30,000	9,000
○ 체육인의 밤	48,000,000원*1회	48,000	28,000	20,000
○ 임원단합대회	12,000,000원*1회	12,000	0	12,000
○ 체육회 30주년 기념 체육대회	30,000,000원*1회	30,000	0	30,000
○ 임원활성화(분과별)	300,000원*5개분과*2회	3,000	0	3,000
202 여비		1,500	0	1,500
01 국내여비		1,500	0	1,500
○ 국내여비		1,500	0	1,500
203 업무추진비		42,000	28,000	14,00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000	10,000	6,00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000	10,000	6,0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000	18,000	8,000
○ 체육회 시책추진		5,000	5,000	0
○ 체육회 사무국 시책추진		3,000	3,000	0

지출 예산 명세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체육회 정책 시책추진		2,000	0	2,000
○ 체육회 간담회(인사,운영,스포츠공정위원회 등)	250,000원*64회	16,000	10,000	6,000
301 일반보상금		19,000	23,000	△4,000
12 기타보상금		19,000	23,000	△4,000
○ 이사 경조사비	200,000원*70명	14,000	18,000	△4,000
○ 체육활동 피해자 위로보상		1,000	1,000	0
○ 종목단체 격려금	200,000원*20개 단체	4,000	4,000	0
405 자산취득비		5,000	5,000	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	5,000	0
○ 컴퓨터, 책상, 의자 등		5,000	5,000	0
602 예치금		125,299	125,171	128
01 예치금		125,299	125,171	128
○ 이사회비 적립		125,299	125,171	128
회원단체회비 사업		72,377	33,130	39,247
회원단체 운영		70,377	33,130	37,247
201 일반운영비		55,877	17,730	38,147
01 사무관리비		5,000	5,000	0
○ 사무운영비(현수막 등)	2,000,000원*1회	2,000	2,000	0
○ 각종위원회 수당(스포츠공정위원회 및 관리위원회등)	100,000원*5명*6회	3,000	3,000	0
02 공공운영비		7,700	5,000	2,700
○ 경기도체육회 사무국장 회비	500,000원*1회	500	300	200
○ 우편요금	4,000원*60통*5회	1,200	1,200	0
○ 소송료	3,500,000원*1회(2024년) 2,500,000원*1회(2025년)	6,000	3,500	2,500
03 행사운영비		43,177	7,730	35,447
○ 총회, 간담회 개최 등	250,000원*6회	1,500	1,500	0
○ 워크숍 개최	500,000원*60명	30,000	6,000	24,000

지출 예산 명세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회원단체 체육대회 개최	10,000,000원*1회	10,000	0	10,000
○ 생활체육 운영 지원	1,677,000원*1회	1,677	230	1,447
203 업무추진비		11,500	10,500	1,00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0	6,000	0
○ 회원단체장 격려	50,000원*60개 회원단체*2회	6,000	6,000	0
03 시책업무추진비		5,500	4,500	1,000
○ 각종위원회 간담회	15,000원*10명*10회	1,500	1,500	0
○ 회원단체 격려	20,000원*10명*20회	4,000	3,000	1,000
301 일반보상금		5,000	4,000	1,000
12 기타보상금		5,000	4,000	1,000
○ 회원단체 경조사비	200,000원*15회	3,000	4,000	△1,000
○ 회원단체 격려금	200,000원*10회	2,000	0	2,000
기타수입		26,383	205,419	△179,036
체육꿈나무 육성기금		26,383	61,419	△35,036
301 일반보상금		26,383	61,419	△35,036
12 기타보상금		26,383	61,419	△35,036
○ 기타보상금		26,383	61,419	△35,036
기부금 사업		39,815	59,336	△19,521
기부금 사업		39,815	59,336	△19,521
기부금 운영		39,815	59,336	△19,521
307 민간이전		39,815	0	39,815
04 단체보조금		39,815	0	39,815
○ 생활체육 활성화 각종 대회 지원		20,000	0	20,000
○ 생활체육 활성화 교실 지원		19,815	0	19,815
출연금		50,138	50,133	5
출연금		50,138	50,133	5

지출예산명세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출연금		50,138	50,133	5
306 출연금		50,138	50,133	5
01 출연금		50,138	50,133	5
○ 기본재산		50,138	50,133	5
후원금		3,003	0	3,003
후원금		3,003	0	3,003
후원금		3,003	0	3,003
512 비지정 후원금		3,003	0	3,003
02 비지정후원금		3,003	0	3,003
○ 후원금		3,003	0	3,003

정관 개정[안]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개정안

1. 제안이유

경기도체육회 「정관」을 준용하여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1) 체육회 회원단체의 종류 : 회원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 (안 제6조)
- 2) 관리단체 지정 시, 경기도종목단체와 사전 협의 (안 제9조 제1항)
- 3) 총회 및 이사회 의결정족수, 가부동수일 때 부결 내용 삭제 (안 제15조 및 제20조)
- 4) 임원구성 개정
 - 부회장 정원 : 9명 이하 → 15명 이하 (안 제23조 제1항 제2호)
 - 이사 정원 : 26명 이상 50명 이하 → 15명 이상 70명 이하 (안 제23조 제1항 제3호)
 - 감사 정원 : 2명 → 3명 (안 제23조 제1항 제4호)
- 5) 회계감사 (안 제47조 제1항)
 - 내부 감사 : 총회 선임된 감사로 매년 시행
 - 외부 감사 : 독립적 외부 회계감사 연 1회 실시
- 6) 명예회장 및 고문 신설
 - 명예회장 : 회장이 위촉 (안 제57조 제1항)
 - 고문 : 이사회 의결로 회장이 위촉 (안 제57조 제2항)

3.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개정안 : “별첨1 참조”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2 참조”

5. 남양주시체육회 정관(전문) : “별첨3 참조”

【별첨1】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개정안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항 중, “체육회의 회원단체는 읍·면·동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로 구성하며,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한다.”를 “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단체가 되는 체육단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제1항 제2호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조문추가)정 한다.

제1항 중, “다만, 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단체가 소속된 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야하며, 읍·면·동 체육회를 관리 단체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단체의 설립을 인가한 읍·면·동장에게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조문추가

제1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항 중, “정회원단체 또는 준회원”를 “체육회 정회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를 “적합하지 않다고”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항 중, “3일전까지”를 “전일까지”로 한다.

제14조 제목 “(총회의 소집)”을 “(총회의 소집 등)” 으로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삭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삭제 한다.

제19조 제목 “(이사회의 소집)”을 “(이사회의 소집 등)” 으로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0조 중, “다만, 가부동수일 때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삭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항 제2호 중, “9인”를 “15인”로 한다.

제1항 제3호 중, “26명 이상 50명”를 “15명 이상 70명”로 한다.

제1항 제4호 중, “2명“을 ”3명“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항 중, “선거일 결정과”를 “체육회는”으로 한다.

제4항 제2호 중, “위촉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26명”을 “15명”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항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사무국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 중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이면 임기와 연임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를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로 한다.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이사회 의결로 사무국장 임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다.
3. 감사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당연직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와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의 임원(사무국장을 제외한다)은 경기도체육회 스포츠평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의 임원은 경기도체육회 스포츠평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항 중, “종목단체를”을 “읍·면·동 소재의 동호인 클럽”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호 중, “기부금 및 찬조금”을 “기부금, 찬조금 및 후원금”으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항 중, “2개월”을 “3개월”로 하고, “남양주시”를 “남양주시장”으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항 중,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을 “총회에서 선임된 감사로부터 매년 감사를 받고, 독립적인 외부회계 감사를 연 1회 실시한다”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항 중,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를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57조 “본회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2. 고문은 이사회 의결로 회장이 위촉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조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남양주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사무국
입 안 자	담 당 국 장 직위 · 성명	사무국장 이 인 철
	담 당 자 직위 · 성명	총무팀장 강 수 연

【별첨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명칭)	제1조(근거 및 명칭)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2조 ~ 제5조 (생략)	제2조 ~ 제5조(현행과 같음)
제6조(조직)	제6조(조직)
① 체육회의 <u>회원단체는 읍·면·동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로 구성하며,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한다.</u>	① ----- <u>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단체가 되는 체육단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읍·면·동체육회 : 체육회의 <u>인가</u> 를 받아 설립된 체육회	2. 읍·면·동체육회 : ----- <u>승인</u> 을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안
<p>제29조(임원의 임기)</p> <p>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u>4년(사무국장을 포함한다)</u>으로 하고 <u>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 중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이면 임기와 연임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u></p> <p>1. (신설)</p> <p>2. (신설)</p> <p>3. (신설)</p> <p>4. (신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의 임원(사무국장을 제외한다)은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p> <p>③ ~ ⑪ (생략)</p> <p>제30조 ~ 제34조 (생략)</p>	<p>제29조(임원의 임기)</p> <p>① ----- --<u>다음 각 호에 따른다.</u></p> <p>1. <u>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2. <u>사무국장은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이사회 의결로 사무국장 임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다.</u></p> <p>3. <u>감사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4. <u>당연직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와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② ----- --(<u>삭 제</u>) ----- -----<u>의결에</u>----- -----</p> <p>③ ~ ⑪ (현행과 같음)</p> <p>제30조 ~ 제34조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안
<p>제35조(읍·면·동체육회 조직 및 구성)</p> <p>① 체육회의 회원단체인 읍·면·동 체육회는 해당 읍·면·동 <u>종목단체를</u> 회원으로 둘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제36조 ~ 제40조 (생략)</p> <p>제41조 (생략)</p> <p>1. ~ 2. (생략)</p> <p>3. ----- (<u>신설</u>)</p> <p>4. ~ 7. (생략)</p> <p>제42조 ~ 제45조 (생략)</p> <p>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p> <p>③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u>2</u>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u>남양주시</u>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47조(회계감사 등)</p> <p>① 체육회는 <u>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한다.</u></p> <p>② ~ ③ (생략)</p> <p>제48조 (생략)</p>	<p>제35조(읍·면·동체육회 조직 및 구성)</p> <p>① ----- ----- <u>소재의 동호인 클럽</u> 을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36조 ~ 제40조 (현행과 같음)</p> <p>제41조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후원금</u></p> <p>4. ~ 7. (현행과 같음)</p> <p>제42조 ~ 제45조 (현행과 같음)</p> <p>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p> <p>③ -----<u>3</u>개월 ----- ----- ----- -----<u>남양주시장</u>----- -----</p> <p>제47조(회계감사 등)</p> <p>① ----- <u>총회에서 선임된 감사로부터 매년 감사를 받고, 독립적인 외부 회계 감사를 연 1회 실시한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48조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안
<p>제49조(사무국)</p> <p>① ~ ② (생략)</p> <p>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채용 방식 등으로 선발된 사람을 이사회 <u>의결</u>을 거쳐 회장이 <u>임명</u>한다.</p> <p>④ ~ ⑥ (생략)</p> <p>제50조 ~ 제56조 (생략)</p> <p>제57조 (신설)</p> <p>1. (신설)</p> <p>2.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 제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생략)</p> <p>제1조~ 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신설)</p> <p>제1조(시행일) (신설)</p>	<p>제49조(사무국)</p> <p>① ~ ② (생략)</p> <p>③ ----- ----- -----<u>의결</u>----- <u>임명</u>---</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50조 ~ 제56조 (현행과 같음)</p> <p>제57조(명예회장 및 고문)</p> <p><u>본회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을 둘 수 있다.</u></p> <p>1. <u>명예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u></p> <p>2. <u>고문은 이사회 <u>의결</u>로 회장이 위촉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 제3조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현행과 같음)</p> <p>제1조~ 제2조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5. 02. 00.)</p> <p>제1조(시행일) <u>이 정관은 총회의 <u>의결</u>을 거쳐 남양주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u></p>

【별첨3】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정 2021. 04. 16.

개정 2022. 07. 28.

남양주시 승인 2022. 09. 22.

개정 2025. 02. 00.

남양주시 승인 2025. 00. 00.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법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체육단체로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6조 및 제35조에 따른 경기도체육회의 회원단체이다.

② 이 법인의 명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체육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Namyangju City Sports Council’(약칭 NSC)이라 한다.

제2조(목적) ‘남양주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과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남양주시 및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체육회의 사무소는 남양주시에 둔다.

제4조(사업) 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22.7.28.)

1.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남양주시 내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
3. 경기도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종합대회의 참가 및 경기도체육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
4. 남양주시 선수·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촉진
5. 남양주시 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6. 남양주시민 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7.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남양주시의 학교체육(청소년체육활동 포함),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 사업
9.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10. 남양주시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문화사업
11. 체육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에 남양주시 체육진흥 및 체육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제공이익의 수혜자) ① 체육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2.7.28.)

② 체육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를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종교, 성별 또는 그 밖에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7.28.)

제2장 조 직 (제목개정 2022.7.28)

제6조(조직) ① 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단체가 되는 체육단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28., 2025.02.00)

1. “회원종목단체”: 남양주시에서 특정 종목의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신설 2022.7.28)
2. “읍·면·동체육회”: 지방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체육회 (개정 2022.7.28., 2025.02.00)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28)

1. ‘정회원단체’는 체육회 이사회를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 회원 가입을 확정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7.28)
2. ‘준회원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가입을 확정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7.28)
3. ‘인정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단체가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7.28.)

③ (삭제 2022.7.28)

④ 제2항의 구분에 따른 회원의 자격요건은 체육단체의 규모, 기능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7.28.)

제7조(권리와 의무) ①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8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제4항과 같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남양주시 읍·면·동체육회(이하 “회원단체”라 한다)의 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7.28.)

제9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체육회는 회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단체가 소속된 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야 하며, 읍·면·동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단체의 설립을 승인한 읍·면·동장에게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2025.02.00)

1. 체육회의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한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때
2. 60일 이상의 회원단체장의 궤위 또는 사고 (개정 2022.7.28.)
3.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와의 분쟁
4. 해당 회원종목단체 내의 각종 분쟁 (개정 2022.7.28.)
5. 재정악화 등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개정 2022.7.28.)

② 체육회가 회원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단체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7.28.)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의 임원은 관리단체 지정된 날로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 (개정 2022.7.28.)

④ 관리단체로 지정된 정회원단체는 체육회의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거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⑤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의 ‘관리단체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⑥ 경기도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6조에 따라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후 그 결과를 경기도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제10조(가입 및 탈퇴 등) ① 제6조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되려는 종목단체는 경기도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 체육회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체육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④ 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 가입되지 않은 종목이 체육회의 회원이 되고자할 경우에는 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제10조의2(회원단체의 강등·제명) ① 체육회의 정회원단체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체육회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2025.02.00)

② 준회원단체와 인정단체가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체육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③ 체육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를 강등 또는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7.28.)

④ 이 정관 이외에 체육회의 회원단체에 대한 강등 또는 제명에 관해서는 경기도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7.28.)

제3장 총회

제11조(총회의 구성) ① 체육회의 총회는 정회원단체의 장으로 대의원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전일까지 체육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00.)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제12조(총회의 기능) 체육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육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회원단체의 가입, 강등 및 제명
3. (삭제 2022.7.28.)
4. 임원의 선임(사무국장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중요 사항 (개정 2022.7.28.)

제13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체육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복수의 감사가 연명으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중 연장자 또는 감사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2022.7.28.)

제14조(총회의 소집 등) ① 체육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02.00)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8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④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전·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전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안전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총회의 기능에 해당되는 안전이어야 하며, 정당한 안전으로 의장이 인정할 때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다만, 제7항 단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7.28.)

⑦ 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전은 의결할 수 없다. (신설 2022.7.28.)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7.28., 2025.02.00)

제16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주고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개정 2022.7.28.)

제17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체육회의 임원(사무국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2022.7.28.)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7.28.)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체육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① 체육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체육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7.28.)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장의 임면동의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준회원단체·인정단체의 가입승인, 강등 및 제명 (개정 2022.7.28.)
9.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22.7.28.)

제19조(이사회 소집 등)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02.00)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분명하게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8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주고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7.28.)
-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7.28.)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7.28., 2025.02.00)

제21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28.)

제22조(서면결의)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7.28.)

제5장 임원

제23조(임원)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2.7.28.)

1. 회장 1명
2. 부회장 15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2025.02.00)
3. 이사 15명 이상 70명 이하(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한다) (개정 2022.7.28., 2025.02.00)
4. 감사 3명 (개정 2022.7.28., 2025.02.00)

② 체육회의 임원은 체육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이사의 수의 상한은 체육회 총회 의결로 20명 이하의 범위 내에서 증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제24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한다.

- ② 대의원확대기구는 다음 각 호의 선거인으로 구성한다.
1. 체육회 정회원단체의 장 (개정 2022.7.28.)
 2. 체육회 정회원단체의 대의원 중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선거인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1. 종목의 규모(지도자, 선수, 동호인의 수 등을 말한다)
 2. 읍·면·동의 인구 규모
 3. 회장선거 직전에 대한체육회 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 제2조제1호의 대회에서 개최된 종목 (개정 2022.7.28.)
- ④ 체육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2025.02.00)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재적수가 15명 미만인 되거나, 임기 만료로 이사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2025.02.00)
 3. 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7.28.)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체육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 ⑤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⑥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선거일전 30일 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 ⑦ 상임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선거일 전 30일 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22.7.28.)
- ⑧ 회장이 제6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제26조제1항에 따른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 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1. 제6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⑩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체육회를 대표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1. 국외에서 개최되는 체육 관련 행사·대회·회의 및 교섭 등
2.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가 주최하거나 주무부처와 합의한 국내개최 국제행사(대회, 회의를 포함한다)

⑪ 제6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다만, 철회하거나 사퇴할 경우에는 그 날까지로 한다.)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⑫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선거관리를 위탁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 가능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⑬ 회장의 선출방법 및 당선인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다수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2.7.28.)
3.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2.7.28.)

⑭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회장 후보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기탁금액 및 반환 조건, 회장선출기구의 규모와 구성, 등록 및 선거 절차, 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부당한 선거개입 및 그에 따른 징계 등 회장선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경기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7.28.)

제25조(선거의 중립성) ① 체육회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 회원종목단체,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경기도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경기도체육회의 회원단체, 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 등 체육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 등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7.28.)

② 체육회의 임·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1 또는 대의원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③ 경기도체육회는 체육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체육회 회장선거 관리 등의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7.28.)

제2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

로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이 없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7.28.)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경기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날부터 남은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2.7.28.)

③ 회장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제27조(임원의 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사무국장을 제외한다)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유효하다.

③ 체육회는 학교체육 전문가 1명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 임원은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고르게 구성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22.7.28.)

1. (삭제 2022.7.28.)

2. 전문체육관계자가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28.)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을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28.)

4. 교육계인사와 읍·면·동체육회 임원이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6.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호에서 이동 2022.7.28.)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행정감사는 정회원단체 대의원 중에서 회원종목 단체 1명과 읍·면·동체육회 1명,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다. (개정 2022.7.28.)

⑥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회장은 경기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그 밖의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경기도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⑧ 경기도체육회가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아 회장의 인준을 하지 않는 경우 즉시 해당 서류의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⑨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정한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체육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회 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개정 2022.7.28.)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임원이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2.7.28.)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임원이 체육회(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체육회의 회원단체,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를 포함한다)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실로 경기도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022.7.28.)

⑦ 임원이 체육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체육회 회원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체육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체육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개정 2022.7.28.)

제2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7.28., 2025.02.00)

1.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02.00.)

2. 사무국장은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이사회 의결로 사무국장 임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02.00.)
 3. 감사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02.00.)
 4. 당연직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와 연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02.0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의 임원은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2.7.28., 2025.02.00)
 -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2.7.28.)
 -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⑥ 회장의 임기는 회장으로 당선된 후 바로 다음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이 확정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개정 2022.7.28.)
 - ⑦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사무국장을 제외한다)는 부회장 및 이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가 이사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 선임을 한 날에 임기가 시작된다. 단, 사무국장은 해당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22.7.28.)
 - ⑧ 감사의 임기는 감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어 이후 2번째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 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28.)
 - ⑩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22.7.28.)
 - ⑪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를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2.7.28.)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7.28.)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22.7.28.)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22.7.28.)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22.7.28.)
 -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개정 2022.7.28.)
6. 경기도체육회 이사회가 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체육회의 임원으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신설 2022.7.28.)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제31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등)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가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7조제7항에 따라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회원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개정 2022.7.28.)

③ 회원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경기도체육회가 요구한 경우 관리단체 지정 요구서가 접수된 30일 전부터 또는 체육회가 관리단체를 지정 할 경우 이사회 안건을 회

장, 부회장, 이사에게 통지한 시점 30일 전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정 2022.7.28.)

제32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제6장 회원단체

제33조(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는 회원인 스포츠클럽 및 등록팀(학생부·일반부)으로 조직한다. (개정 2022.7.28.)

②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조직, 운영 등은 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라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7.28.)

제34조(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은 경기도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22.7.28.)

② 체육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그 밖의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③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횟수 산정 시 해당 회원종목단체 및 다른 시·군·구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제35조(읍·면·동체육회의 조직 및 구성) ① 체육회의 회원단체인 읍·면·동 체육회는 해당 읍·면·동 소재의 동호인 클럽을 회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2.7.28., 2025.02.00)

② 읍·면·동체육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와 생활체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삭제 2022.7.28.)

④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7.28.)

제36조(읍·면·동체육회 임원의 인준 및 취소) ① 읍·면·동체육회의 회장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읍·면·동체육회는 학교체육전문가 1명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읍·면·동체육회의 회장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그 밖의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제7장 각종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체육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체육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체육회의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22.7.28.)

④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7.28.)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1. 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의 정관 및 규정 관리 (개정 2022.7.28.)
2. 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 (개정 2022.7.28.)
3. 체육회의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인정 심의 (개정 2022.7.28.)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2.7.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22.7.28.)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개정 2022.7.28.)

④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다른 각종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22.7.28.)

⑤ 이 밖에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3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가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

- 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 체육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의 사용용도는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다만,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체육회가 정한다.

제41조(재원) 체육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체육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28.)

1. 회원단체의 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찬조금 및 후원금 (개정 2025.02.00.)
4. 사업수익금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7.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2.7.28.)

제42조(잉여금의 처리) 체육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재산의 관리) ① 체육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

공하거나, 재정적·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남양주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체육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체육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③ 체육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남양주시의 조례 등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체육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2.7.28.)

1.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체육회의 회원단체,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2.7.28.)
2. 체육회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체육회의 회원단체,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의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개정 2022.7.28.)

제45조(회계연도) 체육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남양주시장과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7.28.)

② 체육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남양주시장과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7.28.)

③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남양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2025.02.00)

제47조(회계감사 등) ① 체육회는 총회에서 선임된 감사로부터 매년 감사를 받고, 독립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22.7.28., 2025.02.00)

② 체육회는 회원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③ 체육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7.28.)

제48조(경기도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경기도체육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는 그 지원금을 관련 규정 및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② 경기도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회계 등 전반을 조사·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③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가 경기도체육회의 정관, 각종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거나 경기도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경기도 체육회는 해당 단체에 대하여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경기도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2.7.28.)

④ 경기도체육회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 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경기도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2.7.28.)

⑤ 제4항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대한체육회의 ‘감사규정’ 과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9장 사무국

제49조(사무국) ① 체육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채용 방식 등으로 선발된 사람을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7.28., 2025.02.00.)

④ 체육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⑤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개정 2022.7.28.)

⑥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7.28.)

제50조(사무국 직제 등)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7.28.)

제10장 보 칙

제51조(해산) ① 체육회는 재적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남양주시장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한다. (개정 2022.7.28.)

② 체육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남은재산은 남양주시에 귀속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아 체육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 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제52조(정관의 제정·개정) ①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회원시·군체육회 규정(이하 “시·군

체육회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② 체육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후 경기도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남양주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7.28.)

③ 경기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7.28.)

④ 체육회는 정관을 개정하고 남양주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내용을 전자문서를 통해 경기도체육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7.28.)

제53조(규정의 제정·개정) ① 체육회의 규정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개정한다. (개정 2022.7.28.)

② (삭제 2022.7.28.)

③ 체육회는 정관 및 규정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제54조(규정의 해석 등) ① 경기도체육회의 시·도체육회 규정은 이 정관에 우선하며, 이 정관과 경기도체육회의 시·군체육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 반드시 경기도체육회의 시·군체육회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7.28.)

② 체육회가 경기도체육회 정관, 시·군체육회 규정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분명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7.28.)

제55조(제한사항) 체육회가 경기도체육회 정관, 각종 규정과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기도체육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권리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1. 경기도체육회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의결할 권리
2.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 선거인 후보자 추천 권리
3. 경기도체육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4. 경기도체육회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5. 경기도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는 권리
6. 경기도체육회 재정 지원 (개정 2022.7.28.)
7. 국내대회 유치 및 개최
8. 국제대회 유치

제56조(경영공시) ① 체육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② 제1항의 게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밖에 체육회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2.7.28.)

제57조(명예회장 및 고문) 본회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2. 고문은 이사회 의결로 회장이 위촉한다.

[본조 신설 2025.02.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체육회 승인을 거쳐, 남양주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의 승계 등) 설립 등기한 체육회는 법인설립 이전 ‘남양주시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을 포괄 승계하며, 법인설립시 이전 ‘남양주시체육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전 체육회의 법인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체육회의 임·직원은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호) 부칙 제7조 1항」에 따른 체육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하고 임기의 만료일은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하고 감사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이 정관 시행 당시 (구)남양주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호)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체육회의 임원(당연직 공무원 및 사무국장은 예외로 한다)의 연임횟수에는 (구)남양주시체육회 및 (구)남양주시생활체육회의 임원의 연임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연임횟수에는 (구)남양주시경기단체와 (구)남양주시종목별연합회의 임원의 연임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부 칙(개정 2022. 7.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본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남양주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9조제10항 및 제11항 개정정관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임원이 되려는 자의 연임 횟수 산정에 적용하되, 이 정관 시행 전 누적된 임원 재임 횟수 및 연임 횟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 칙(개정2025. 02. 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남양주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규정 개정(안)

부의안

의안번호	제3호	안전 종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결사항 <input type="checkbox"/> 보고사항
건 명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 개정(안)	제 안 자	사무국장
<p>1. 의결주문 :</p> <p style="padding-left: 40px;">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p> <p>2. 부의근거 :</p> <p style="padding-left: 40px;">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18조 제2항 제2호</p> <p>3. 제안사유 :</p> <p style="padding-left: 40px;">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을 보완하여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함.</p> <p>4.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직업 종사의 제한(겸직제한)에 대한 체계화 및 완화 - 규정 개정 시 ‘근로기준법’ 에서 제시한 절차에 따르도록 신설 -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서 서식 신설 <p>5. 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 참조</p>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 개정안

1. 제안사유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규정을 보완하여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1) 타 직업 종사의 제한(검직제한)관련 체계화 및 완화 (안 제23조)
- 2) 규정 개정 시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한 절차에 따르도록 신설 (안 제37조)
- 3)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5호 서식)

3.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 “별첨1 참조”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2 참조”

5.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전문) : “별첨3 참조”

【별첨1】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 개정안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회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정해진 근무시간 내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2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② “지도자는 근무시간 이외에 체육 지도 및 강의, 선수활동 등 유사직무에 종사할 수 있다. 다만 유사직무 이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장에게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로 한다.

③ “회장은 지도자가 근무시간 이외의 제2항의 유사직무 또는 유사직무 이외의 다른 직업의 종사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지도자 또는 체육회의 품위를 저해시킨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4항내지 제6항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규정 개정) 이 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도체육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 따른다.

[별지 제5호 서식] 신고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겸직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겸 직 내 용	종 사 처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종사직무 (※구체적으로 기재)		
	종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종사시간 (시작시간 - 종료시간)		
유의사항	<p>「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업의 종사(겸직)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지도자 또는 체육회의 품위를 저해시키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겸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숙지 확인 ☐</p>		
<p>「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사직무 이외의 다른 직업 종사(겸직)에 대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위 작성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00체육회장 귀하</p>			

소 관 부 서		사무국
입 안 자	담 당 국 장 직위 · 성명	사무국장 이 인 철
	담 당 자 직위 · 성명	운영팀장 김 진 혜

【별첨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안
<p>제1조 ~ 제22조 (생략) 제23조(타 직업종사의 제한) ① 지도자는 <u>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u> 다만, 회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신설)</p> <p>③ (신설)</p> <p><중전 제2항내지 제4항에서 이동 수정> 제24조 ~ 제36조 (생략) 제37조(규정 개정) (신설)</p> <p>부칙 (신설)</p>	<p>제1조 ~ 제22조 (현행과 같음) 제23조(타 직업 종사의 제한) ① -- <u>--정해진 근무시간 내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u></p> <p>② <u>지도자는 근무시간 이외에 체육 지도 및 강의, 선수활동 등 유사직무에 종사할 수 있다.</u> 다만 유사직무 이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장에게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p> <p>③ <u>회장은 지도자가 근무시간 이외의 제2항의 유사직무 또는 유사직무 이외의 다른 직업의 종사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지도자 또는 체육회의 품위를 저해시킨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제한할 수 있다.</u></p> <p><제4항내지 제6항으로 이동 수정> 제24조 ~ 제36조 (현행과 같음) 제37조(규정 개정) <u>이 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도체육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 따른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u></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 안																													
<p>[별지 제5호서식] (신설)</p>	<p>[별지 제5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겸직 신고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성 명</td>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생년월일</td> <td style="width: 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 속</td> <td colspan="3"></td> </tr> <tr> <td rowspan="4"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 text-align: center;">겸 직 내 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종사처 (상명 전변호 주소)</td> <td colspan="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종사직무 (※구체적으로 기재)</td> <td colspan="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종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td> <td colspan="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종사시간 (시작시간 - 종료시간)</td> <td colspan="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유의사항</td> <td colspan="3"> <p>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작업의 종사(겸직)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지도자또는 체육회의 품위를 저하시키는 경우인 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겸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숙지 확인 ☐</p> </td> </tr> <tr> <td colspan="4" style="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사직무 이외의 다른 작업 종사(겸직)에 대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위 작성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OO체육회장 귀하</p> </td> </tr> </table>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겸 직 내 용	종사처 (상명 전 변호 주소)			종사직무 (※구체적으로 기재)			종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종사시간 (시작시간 - 종료시간)			유의사항	<p>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작업의 종사(겸직)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지도자또는 체육회의 품위를 저하시키는 경우인 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겸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숙지 확인 ☐</p>			<p style="text-align: center;">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사직무 이외의 다른 작업 종사(겸직)에 대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위 작성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OO체육회장 귀하</p>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겸 직 내 용	종사처 (상명 전 변호 주소)																													
	종사직무 (※구체적으로 기재)																													
	종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종사시간 (시작시간 - 종료시간)																													
유의사항	<p>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작업의 종사(겸직)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지도자또는 체육회의 품위를 저하시키는 경우인 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겸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숙지 확인 ☐</p>																													
<p style="text-align: center;">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사직무 이외의 다른 작업 종사(겸직)에 대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위 작성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OO체육회장 귀하</p>																														

【별첨3】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

제정 2021. 12. 21.

개정 2024. 02. 02.

개정 2025. 02. 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남양주시체육회 인사규정 및 직원복무 규정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채용, 계약, 복무, 근무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남양주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채용되어 지역의 생활체육 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해 근무하는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2. “생활체육 지도”란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체육전문 특기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체육지도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생활체육지도자통합관리시스템(slims.sportal.or.kr)”(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체육회가 지도자의 원활한 생활체육 지도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수혜처 파악 및 대상자 매칭, 지도활동 계획, 실적부의 기록·보고 등의 업무를 전산매체를 통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체육지도자 자격증”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
5. “전환배치”란 지도자의 직무종류 또는 직무내용, 근무장소 등을 변경하는 인사이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체육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지도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채용) ① 지도자는 체육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채용한다.

② 회장은 체육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인원, 선발종목, 채용시기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③ 회장이 지도자를 선발할 때에는 체육회 인사위원회 위원을 실기 및 면접시험의 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회장이 지도자를 선발할 때에는 시·도체육회 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과장 이상)가 채용 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심사위원으로 지정된 자는 불참 시 동일 업무 담당자 중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공정채용의 원칙) ① 지도자는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체육회는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는 채용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도자 선발과정을 시·도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른 공정채용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제6조(채용시험의 단계) ① 채용시험은 제1차, 제2차, 제3차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1차 전형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및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체육회는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선발의 방법) ① 제1차 전형은 서류심사로, 제2차 시험은 필기시험(지도 종목 수업 지도안 작성) 및 수업능력 평가(실기 지도 포함)로, 제3차 시험은 적성 면접 평가로 한다.

- ② 제2차 시험은 현장 지도 종목 수업의 실연(實演) 등을 통하여 지도자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종목지도 능력을 중점 평가한다.
- ③ 제3차 시험은 적성면접으로, 지도자로서의 적성·인격 및 소양을 평가한다.
- ④ 회장은 채용에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가점) ① 채용시험 선발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지 아니하더라도 지도 가능한 타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응시자 중 교육대학(원),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말함)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주최하는 전국대회 입상자,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 출신, 국제대회 입상자, 국가대표 출신, 청년층(만 34세 이하)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에 따른다.

③ 가점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9조(채용시험 실시 및 공고) ① 채용시험은 지도자의 결원 및 배치인원 증원 발생 시 회장이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회장이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방법, 종목, 배점비율, 응시자격, 원서제출절차 및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이 체육회 채용 관련 규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고기간을 달리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일 5일 전까지 이를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체육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체육지도자 자격증”의 사본(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발급예정증명서)
2. 제8조제2항에 따른 가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원종목단체가 발급하는 종목별 대회 입상 경력 증명서 등)
3.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11조(합격자의 결정) ① 제1차 서류전형 합격 인원은 선발 인원의 4배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원자의 수가 선발 인원의 4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을 면제한다.

② 제2차 시험(필기 및 수업능력평가: 50점 만점) 및 제3차 시험(적성면접평가: 50점 만점)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합산하여 시험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체육회 인사위원회의 결정자

④ 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을 합산한 시험성적이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⑤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채용될 수 없고, 채용 이후 그와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도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

3. 타 체육단체(「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재직 시 부패행위, 비위행위 등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4. 타 체육단체에서 부정행위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본회 인사규정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근로계약) ① 회장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의 채용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지 아니하는 업무, 휴직 대체를 위해 지도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지도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지도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무 상한연령(만 60세)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합격자의 제출서류) 채용이 확정된 지도자는 채용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2. 제10조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이외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3. 경력증명서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5. 건강진단서(의료기관 발행)

제15조(수습임용) ① 생활체육지도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최초임용일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②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때
 2. 본회의 규약 및 규정, 내규를 위반한 때
 3. 제12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5. 회장이 본회 근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 ③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16조(전환배치) ① 회장은 지도자의 능력, 적성, 경력과 지역의 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전환배치를 할 수 있다.

1. 지도자의 지도종목, 지도대상, 담당업무 등을 변경하는 전환배치
(예: 일반 ↔ 어르신 지도자)

2. 동일 시·도 내 시·군·구체육회 지도자 간의 전환배치

② 회장은 2년 이상 근속한 지도자에 한하여 전환배치를 할 수 있으며, 회장이 지도자를 전환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지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전환배치의 경우, 동일 시·도 내 쌍방의 시·군·구체육회장 및 해당 지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전환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 근무지의 근속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한다.
- ④ 체육회가 전환배치를 실시할 때에는 즉시 전환배치 관련 내용을 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근무성적 평정) ① 회장은 매년 근무성적 평정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도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은 체육회 사무국장과 지도자 관리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회장은 평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지도자 관리부서장 또는 사무국장이 공석인 경우 체육회 인사규정에 따라 그 직무대행자가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가 육성하는 공공스포츠클럽에 파견된 지도자에 대해서는 해당 클럽의 사무국장이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④ 지도자의 지도 실적과 관련한 근무성적 평정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계획 및 실적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⑤ 회장은 지도자 활동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자가 거짓으로 근무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지도자 배치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지도자 근무평정 시 이를 반영한다.

제18조(휴직, 복직 등) 지도자의 휴직, 복직, 정년, 퇴직, 근로계약의 해지, 해고의 예고 등에 관한 사항은 본회 규정을 따른다.

제19조(담당업무) ①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2. 생활체육동호인활동 조사, 지도 및 관리
3.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보급
4. 기타 생활체육 지도활동과 관련된 업무
5. 생활체육 관련 상담·행정업무
6. 본회 사업과 관련된 업무

② 지도자는 전공종목 외에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종목을 함께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도자는 매년 초에 연간 생활체육활동 지도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근무시간) ① 지도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중식시간 제외), 주 40시간(초과근무 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지급)으로 하고, 근무시간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하고 1일 지도방문 횟수 등은 정부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지침」에 따른다.

② 기타 근무시간 관련사항은 본회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21조(출장) ① 회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자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통합관리시스템 실적보고서 작성 및 비치)

② 지도자가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체육회가 주관하는 지도자 직무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02. 02.)

③ 출장 여비는 체육회 여비규정과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교육) ① 회장은 지도자의 지도활동 프로그램 개발능력과 기본자질 함양을 도모하고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고양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지도자는 지도활동 프로그램 개발능력함양 교육과 사무국 외에서의 각종 교육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제2항의 지도자 교육 미 수료자(무단불참자 및 교육태도 불성실자 등)에 대해서는 지도자 근무평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타 직업종사의 제한) ① 지도자는 정해진 근무시간 내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5. 02. 00.)

② 지도자는 근무시간 이외에 체육 지도 및 강의, 선수활동 등 유사직무에 종사할 수 있다. 다만 유사직무 이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장에게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02. 00.)

③ 회장은 지도자가 근무시간 이외의 제2항의 유사직무 또는 유사직무 이외의 다른 직업의 종사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지도자 또는 체육회의 품위를 저해시킨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5. 02. 00.)

④ 지도자는 정부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하는 영리활동 중 지도자의 노무를 투입하는 영리활동은 할 수 없다. (개정 2025. 02. 00.)

⑤ 지도자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타 체육단체(「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5. 02. 00.)

⑥ 타 기관(단체)의 사업에 지도자를 파견 또는 근무하도록 할 때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02. 00.)

제24조(공공스포츠클럽으로의 파견) ① 정부에서 육성하는 공공스포츠클럽에 파견된 지도자는 소속 체육회 지도자의 근무조건(근무시간, 휴가, 휴직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의 공공스포츠클럽 파견수당은 해당 클럽에서 지급할 수 있고, 파견기간은 해당 체육회에서 정한다.

제25조(손해배상) 지도자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체육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지도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복무관리) ① 지도자의 복무관리자는 지도자 관리부서의 장(관리부서의 장이 없을 경우 그 직무대행자)으로 한다.

② 복무관리자는 지도자 운영실태 점검 및 수시 업무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위해 제2조제3호의 통합관리시스템(대한체육회 구축)을 이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복무관리자는 채용 시 지도자의 인사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2. 지도자는 지도활동 후 2일 내에 통합관리시스템에 실적보고를 입력하여야 한다.

3. 기타 세부사항은 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및 정부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지침」에 따른다.

제27조(휴가·휴일 등) 지도자의 연차휴가, 생리휴가, 경조사휴가, 병가, 휴일, 휴가 기간 중의 휴일은 본회 규정을 따른다.

제28조(공가) ① 회장은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유급)를 부여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행사에 참가할 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에 참여할 때

. 삭제 (2024. 02. 02.)

② 지도자의 공가 관련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본회 규정을 따른다.

제29조(임산부의보호등) 임신 중인 지도자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태아검진 시간 허용, 난임치료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시간,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본회 규정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급여의결정) ① 지도자의 급여는 정부 예산에 따라 매년 정한다.

② 지도자의 급여 및 수당은 담당업무의 특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체육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급여지급일등) 지도자의 급여 지급일, 급여 계산기간, 지급방법, 공제, 연장수당 등은 본회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퇴직급여) ① 지도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퇴직연금 규약에 따른다.

③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 제한한다.

④ 회장은 지도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금의 납입 및 지도자의 퇴직연금 수령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징계의종류및효력) 지도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사유, 징계절차, 범죄고발 등은 본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도자 관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접수·조사·피해자 보호·조치·예방교육 및 고충처리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그에 따라 정한 본회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35조(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도자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접수·조사·피해자 보호·조치·예방교육 및 고충처리 등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그에 따라 정한 본회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36조(준용준칙) ① 체육회는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② 지도자의 채용, 복무 및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본회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7조(규정개정) 이 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도체육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25. 02. 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신설 2025. 02. 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및 가점(제8조제2항 관련)

가점대상	우대사항
교육대학(원),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제1차 및 제2차 시험 만점의 10% 가점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주최하는 전국대회 입상자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 출신	제1차 및 제3차 시험 만점의 5% 가점
국제대회 입상자	제1차 및 제3차 시험 만점의 10% 가점
청년층(만 34세 이하),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성매매피해자,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여성가장, 노숙인)	
국가대표 출신	제1차 및 제3차 시험 만점의 15% 가점

* 가점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 원 서

접수 번호	
----------	--

사 진

인 적 사 항	성 명	
	생 년 월 일	- (만 세)
	자 격 증	주 종 목 부 종 목

근 무 회 망 지	1 지역	
	2 지역	
	3 지역	

본인은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모집에 응모코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체육회장 귀하

접 수 증

■ 접수 번호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체육회장

수 험 표

사 진	접수번호	
	생년월일	
	성 명	
실기종목		

20 년 월 일

○○○○체육회장

[별지 제2호서식]

생활체육지도자 근로계약서

○○체육회와 근로자(생활체육지도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제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합니다.

□ 다 음 □

1. 계약 체결자

사 용 자	사 업 체 명	○○체육회
	소 재 지	
	대 표 자	
근 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2. 계약조건

가. 기본사항

계 약 기 간	20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			
신 분	무기계약직 직원			
임 금	급 여 월 원			
	00 수당 월 원			
	00 수당 월 원			
취 업 장 소				
담 당 업 무	지역 생활체육 지도 및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기타 생활체육 관련 배정업무			
근 무 일 및 근 무 시 간	근 무 일	주휴일	근무시간	휴게시간
	월 ~ 금	일요일	09:00~18:00	12:00~13:00
○근로자는 지도자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기의 근무시간, 근무일,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예, 일요일 근무시 주중 1일 휴무)				
급여지급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 매월 25일			
급여지급방법	개인통장으로 지급			
휴 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 기타 정부 및 체육회에서 정한 휴일			
휴 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와 복무규정에 따른 휴가 적용			

나. 기타사항

본 계약은 계약일 부터 유효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체육회 복무규정 및 지도자 운영규정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사용자	○○ 체육회 회장 (인)(서명)	근로자	○○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인)(서명)
-----	----------------------	-----	---------------------------

※ 본 서식은 표준인이므로 근로시간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수정하여 사용 가능(예 육아휴직 대체인력(기간제 계약직) 계약서 수정)

근무성적 평정표

피 평 정 자	소	속	평 정 자	소	속
	성	명		직	명
	생	년		월	일

◆ 평정기간 : . . . ~ . . . (평정기준일 : . . .)

평정요소	배점	평정기준	평정 등급 및 점수					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근무실적	40	○ 생활체육 지도활동 계획대비 실적 (지도건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5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탁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우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보통</td> <td style="text-align: center;">미흡</td> <td style="text-align: center;">불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90%</td> <td style="text-align: center;">89~80%</td> <td style="text-align: center;">79~70%</td> <td style="text-align: center;">69~60%</td> <td style="text-align: center;">60% 미만</td> </tr> </table>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0~90%	89~80%	79~70%	69~60%	60% 미만	40-36	35-31	30-26	25-21	20-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0~90%	89~80%	79~70%	69~60%	60% 미만													
2. 프로그램	20	○ 생활체육 지도활동 프로그램 수립 능력	20-18	17-15	14-12	11-9	8-0										
3. 현장평가	20	○ 생활체육 지도활동 프로그램 현장 적용 및 운영 능력	20-18	17-15	14-12	11-9	8-0										
4. 직무능력	20	○ 근무 책임감 및 성실성	20-18	17-15	14-12	11-9	8-0										
직무태도 (감점)		○ 징계처분(1회당)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직</td> <td style="text-align: center;">감봉</td> <td style="text-align: center;">견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able>	정직	감봉	견책	15	10		5								
		정직	감봉	견책													
		15	10	5													
		○ 복무위반(1회당)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무단결근</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단지각</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단조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able>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5	3	3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5	3	3															
○ 사업지침 위반(1회당)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허위 지도활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그 외 지침 위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able>	허위 지도활동	그 외 지침 위반	10	5													
허위 지도활동	그 외 지침 위반																
10	5																
○ 체육회 교육 참여자세(1회당)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무단불참</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단퇴소</td> <td style="text-align: center;">태도불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able>	무단불참	무단퇴소	태도불량	5	3	2											
무단불참	무단퇴소	태도불량															
5	3	2															
합 계 점 수(총점 100점)																	

- ※ 지방체육회는 “근무실적(40)”을 제외한 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세부 평정방식(평정척도 등)을 마련하여 지도자 근무성적 평정을 시행해야 한다.
- ※ 평정자는 평정결과가 피평정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인식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 ※ “근무실적(40)”은 정량지표이므로 생활체육지도자 통합관리시스템 지도활동 “계획 대비 실적(실행률)”을 확인하여 평정결과를 산출한다.
- ※ “프로그램(20)”, “현장평가(20)”, “직무능력(20)”은 사무국장(처장)과 지도자 관리 보직자가 각각 평정한 점수의 평균 점수를 평정점수로 한다.
 - 지도자 관리 보직자가 없는 지방체육회는 사무국장 평정점수만 반영한다.
- ※ “직무태도” 감점사유가 발생할 시, 각 평정요소에 대한 합산 점수를 산출한 후 평정점수에서 감점 처리한다.
 - 지도자교육 수료 항목은 대한체육회에서 지방체육회로 통보한 내용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 ※ 평정자는 천재지변, 전염병 등 발생에 따라 지도활동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 근무성적평정표 관련사항(평정요소, 배점, 기준, 등급 및 점수 등)을 한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태관리기록부

소 속	
종 목	
성 명	

일 자	근 무 시 간			확 인			비 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근무시간	본 인	계 원	책임자	

※ 비고란에는 결근, 지각, 조퇴, 휴가 등 근태 참고사항을 적는다.

겸직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겸 직 내 용	종 사 처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종사직무 (※구체적으로 기재)		
	종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종사시간 (시작시간 - 종료시간)		
유의사항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업의 종사(겸직)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지도자 또는 체육회의 품위를 저해시키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겸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였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숙지 확인 <input type="checkbox"/>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사직무 이외의 다른 직업 종사(겸직)에 대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작성자 (인)			
00체육회장 귀하			

인정단체 가입 승인(안)

부의안

의안번호	제4호	안전 종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결사항 <input type="checkbox"/> 보고사항
건 명	인정단체 가입 승인(안)	제 안 자	사무국장

1. 의결주문 :

남양주시체육회 인정단체 가입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 부의근거 :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18조 제8호

3. 제안사유 :

신규 가입 신청한 종목단체에 대하여, 가입 요건 충족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판단됨에 우리시 회원단체로 가입승인 하고자 함.

4. 주요골자

등 급	단체명	회 장	임원현황	단체현황	체육회 활동 이력
인정단체	스쿼시협회	이정철	총 13명	6개클럽 92명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스쿼시 여자 18세이하부 단체전 우승

5. 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 참조.

2025. 인정단체 가입 승인(안)

1 관련근거


-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6조(조직) 및 제10조(가입 및 탈퇴 등)
- 남양주시체육회 가입 및 탈퇴 규정 제2조(정의), 제3조(가입신청서류), 제6조(인정단체의 가입 요건)

2 종목소개

- 스쿼시 종목은 탁구와 테니스를 결합한 종목으로 라켓으로 공을 주고받는 게임이며 단체, 개인 운동이 가능하며,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다.

3 단체현황

- 스쿼시협회

	성 명	이정철	출생년도	1966년
	거 주 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직 업	전기시설업체 임원		
	임원현황	총 13명(회장 1명, 부회장 3명, 전무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단체현황	6개 클럽 92명		

- 검토결과 : 이상없음

○ 검토사항

연번	내 용	검토결과
1	전국 및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	유일 단체
2	남양주시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단체	요건 충족
3	5개 이상의 동호회나 클럽이 조직되어 있는 단체	6개 클럽
4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2회 개최
5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발전성 높음
6	본회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 규정이 제정 되어 있을 것	2024. 10. 29.(화) 제정
7	경기도 상위 단체 인준 결과	발급완료

○ 활동사항

- 2023. 12. 16.(토) : 창립총회 및 정기이사회 개최
- 2024. 2. 24.(토) : 제1회 남양주시 스쿼시 동호인 연합대회 개최
- 2024. 7. 20.(토) : 제2회 남양주시 스쿼시 동호인 연합대회 개최
- 2024. 12. 10.(화) : 경기도스쿼시연맹 회장 인준 동의서 승인

○ 종합검토결과

- 스쿼시종목은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 정회원 단체임
 - * 아시안게임 및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 매년 진접스쿼시 소속으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하는 등 단체의 발전이 기대되는 종목임
- 이에, “인정단체” 로 가입 승인하고자 함
 - *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스쿼시 여자 18세 이하부 단체전 우승
 - * 2019년 남양주시체육회 초등스포츠클럽 거점형 운영(스쿼시교실)
 - * 관내 학교운동부 현황(1개소) : 오남고등학교(고1 2명, 고2 1명, 고3 1명)

임원 및 대의원 명단

○ 임원 명단

연번	직 책	성 명	출생연도	성 별	거주지
1	회 장	이 * 철	1966년생	남	평내동
2	부 회 장	이 * 열	1968년생	남	진접읍
3	부 회 장	박 * 영	1976년생	여	호평동
4	부 회 장	오 *	1968년생	남	호평동
5	감 사	황 * 수	1980년생	남	진접읍
6	전무이사	이 * 욱	1971년생	남	포천시 소흘읍 (관내 직장인)
7	이 사	박 * 이	1989년생	여	진접읍
8	이 사	조 * 국	1982년생	남	평내동
9	이 사	조 * 리	1981년생	여	다산동
10	이 사	진 * 형	1980년생	남	진접읍
11	이 사	가 * 현	1995년생	남	포천시 내촌면 (관내 직장인)
12	이 사	이 * 숙	1981년생	여	진접읍
13	이 사	김 * 환	1996년생	남	오남읍

○ 대의원 명단

연번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거주지
1	대 의 원	서 * 원	1980년생	남	진접읍
2	대 의 원	최 * 규	1977년생	남	진접읍
3	대 의 원	차 * 광	1977년생	남	가평군 (관내 직장인)
4	대 의 원	박 * 식	1975년생	남	호평동
5	대 의 원	권 * 호	1966년생	남	호평동
6	대 의 원	임 * 식	1970년생	남	도농동

사무국장 임명 계획(안)

부 의 안

의안번호	제5호	안전 종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결사항 <input type="checkbox"/> 보고사항
건 명	사무국장 임명 계획(안) 심의·의결	제 안 자	체육진흥과장

1. 의결주문 :

남양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임명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 부의근거 :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18조 제2항 제5호

3. 제안사유 :

사무국장의 임면사항을 의결하여 임명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임명절차 : 회장추천 → 이사회 심의·의결
- 대 상 자(추천)
 - 직 위 : 사무국장
 - 성 명 : 이인철
 - 임 명 일 : 2025. 3. 4.(화)
- 임 기 : 2년
- 기 간 : 2025. 3. 4.(화) ~ 2027. 3. 3.(수)

5. 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 참조

남양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임명 계획(안)

◇ 계약직 직원(사무국장)의 계약기간만료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임명 계획입니다.

1 큰 거

○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49조(사무국) ① 체육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채용 방식 등으로 선발된 사람을 이사회 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2 개 요

○ 계약만료 대상

구분	직급	성명	입사일	계약기간	주요업무
사무국	국장	이인철	'19. 3. 4.	'19. 3. 4. ~ '21. 3. 3.(2년) '21. 3. 4. ~ '23. 3. 3.(2년) '23. 3. 4. ~ '25. 3. 3.(2년)	사무국 업무총괄

3 임명계획

- 절차 : 체육회장 대상자 추천 → 이사회 심의·의결
- 추천대상 : 現 사무국장 이인철
- 직 급 : 국장(5급)
- 직 종 : 계약직
- 계약기간 : '25. 3. 4. ~ '27. 3. 3.(2년)
- 주요업무 : 남양주시체육회 사무국 업무 총괄

○ 추천사유 :

- 사무국장은 조직안정화, 생활체육 활성화, 전문체육대회 성과 등 사업 실행 및 다양한 분야에서 체육회 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육회의 체계적 운영기반을 다지는 탁월한 성과를 보여줌.
- 사무국장의 연임은 체육회 발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며, 재임기간 동안 주요사업 성과와 조직관리 능력을 보았을 때 현 국장의 임명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사업성과]

○ 조직 기반 강화 및 체계 확립

- 남양주시체육회 법인 설립 완료를 통해 조직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 정관 개정 및 제 규정 제·개정을 통해 체육회 운영의 기틀 확립
- 회원단체 조직 정비, 신규 단체 가입 및 관리단체 지정 등 체계적인 조직 운영

○ 전문체육 성과 및 체육 활성화

-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종합 10위 성과달성
- 선수 선발전 사업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선수 관리 강화

○ 생활체육 확대 및 시민 참여 증대

- 생활체육교실을 확대하여 시민 모두가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
- 관내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지원을 통해 참여 기회 확대.

남양주시체육회 정기총회 안건 상정[안]

부의안

의안번호	제6호	안전 종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결사항 <input type="checkbox"/> 보고사항
건 명	남양주시체육회 정기총회 안전 상정(안)	제 안 자	사무국장
<p>1. 의결주문 :</p> <p style="padding-left: 20px;">2025년도 정기총회 안전 상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p> <p>2. 부의근거 :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18조 제2항 제7호</p> <p>3. 제안사유 :</p> <p style="padding-left: 20px;">2025년 정기총회 안전 상정(안)의 적정여부 심의 하고자 함.</p> <p>4.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2025. 2. 28.(금) - 장 소 : 남양주시청 2층 여유당 - 참석대상 : 남양주시체육회 정회원단체장(6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단체 46개, 읍면동체육회 16개 · 보고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호 인정단체 가입 승인 결과보고 제2호 남양주시체육회 임원 선임 결과 보고 · 심의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호 2024년도 사업결과 및 수입·지출결산(안) 심의·의결 제4호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개정(안) 심의·의결 제5호 남양주시체육회 임원 선임(안) 심의·의결 제6호 남양주시체육회 감사 선임(안) 심의·의결 <p>5. 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 참조</p>			

2025년 정기총회 개최 계획(안)

1 개요

- 일 시 : 2025. 2. 28.(금) 11시
- 장 소 : 남양주시청 2층 여유당
- 참석대상 : 남양주시체육회 정회원단체장(62명)
 - 종목단체 46개, 읍면동체육회 16개
- 부의안건
 - 보고안건
 - 제1호 인정단체 가입 승인 결과보고
 - 제2호 남양주시체육회 임원 선임 결과 보고
 - 심의안건
 - 제3호 2024년도 사업결과 및 수입·지출결산(안) 심의·의결
 - 제4호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개정(안) 심의·의결
 - 제5호 남양주시체육회 임원 선임(안) 심의·의결
 - 제6호 남양주시체육회 감사 선임(안) 심의·의결

2 시간계획

시 간		소요시간 (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1:00	11:01	1	개회 및 나라사랑의식	일 동
11:01	11:05	4	인 사 말 씀	체육회장
11:05	11:25	20	종목단체회장 인준서 수여	체육회장
11:25	11:50	25	안건별 제안설명 및 심의·의결	사무국장 일 동
11:50	-	-	폐 회	사 회 자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보고

부 의 안

의안번호	제7호	안전 종류	<input type="checkbox"/> 의결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고사항
건 명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제 안 자	사무국장

1. 의결주문 :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보고 한다.

2. 부의근거 :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18조 제2항 제1호

3. 제안사유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 이후, 체육진흥기금의 증액이 결정됨에 따라, 변동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보고 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주요내용

-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입상선수 포상금 증액 분 반영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명	증감액	비 고
계		1,500	
시비(기금)	○ 전문체육대회입상지원	1,500	증

5. 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 참조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1 편성방향

- 시비(기금) 증액에 따른 예산액 반영

2 개 요

- 2024년 4회 추가경정 예산 : 4,920,895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증감
예산액	4,920,895	4,919,395	1,500

- 사업별 주요내용

구 분	세부사업명	사 유	비 고
시비(기금)	○ 전문체육대회입상지원	- 입상선수 행사실비보상금 증액 (증 1,500천원)	

- 입상현황

- 2024.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구 분	성 명	소 속	경기결과		
			세부종목	성 적	포상금
빙 상	오현민	(주)아이티엔	혼성계주	1위	1,500,000원 (2인 n/1)

〈수입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합 계	4,920,895	4,919,395	1,500	
보조금사업	4,306,013	4,304,513	1,500	
일반보조금(시비+기금)	3,206,644	3,205,144	1,500	·전국체육대회 입상지원(기금 / 1,500천원) - 입상선수 행사실비 보상금 증액
국비보조금	67,928	67,928	0	
도비보조금	237,269	237,269	0	
시·교육청비보조금	280,000	280,000	0	
시 비	140,000	140,000	0	
교육청비	140,000	140,000	0	
도·시·교육청비보조금	122,540	122,540	0	
도 비	30,635	30,635	0	
시 비	30,635	30,635	0	
교육청비	61,270	61,270	0	
국·도·시비보조금	377,376	377,376	0	
국 비	188,688	188,688	0	
도 비	94,344	94,344	0	
시 비	94,344	94,344	0	
도·시비보조금	14,256	14,256	0	
도 비	4,277	4,277	0	
시 비	9,979	9,979	0	
자체사업	492,413	492,413	0	
이사회비, 회원단체	391,243	391,243	0	
이사회비	321,633	321,633	0	
회원단체	69,610	69,610	0	
기타수입	101,170	101,170	0	
기부금사업	69,336	69,336	0	
기부금사업	69,336	69,336	0	
출연금	50,133	50,133	0	
출연금	50,133	50,133	0	
후원금	3,000	3,000	0	
후원금	3,000	3,000	0	

<지출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사유
합 계	4,920,895	4,919,395	1,500	
보조금사업	4,306,013	4,304,513	1,500	
일반보조금(시비+기금)	3,206,644	3,205,144	1,500	
국비보조금	67,928	67,928	0	
도비보조금	237,269	237,269	0	
시·교육청비보조금	280,000	280,000	0	
시 비	140,000	140,000	0	
교육청비	140,000	140,000	0	
도·시·교육청비보조금	122,540	122,540	0	
도 비	30,635	30,635	0	
시 비	30,635	30,635	0	
교육청비	61,270	61,270	0	
국·도·시비보조금	377,376	377,376	0	
국 비	188,688	188,688	0	
도 비	94,344	94,344	0	
시 비	94,344	94,344	0	
도·시비보조금	14,256	14,256	0	
도 비	4,277	4,277	0	
시 비	9,979	9,979	0	
자체사업	492,413	492,413	0	
이사회비, 회원단체	391,243	401,743	0	
이사회비	321,633	321,633	0	
회원단체	69,610	69,610	0	
기타수입	101,170	101,170	0	
기부금사업	69,336	69,336	0	
기부금사업	69,336	69,336	0	
출연금	50,133	50,133	0	
출연금	50,133	50,133	0	
후원금	3,000	3,000	0	
후원금	3,000	3,000	0	